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20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보건복지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2
 - 보건복지부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질병관리청 소관
-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보건복지부 소관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7조 3항에 따라 소위원장의 지정을 받은 제가 직무대리로서 주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건복지 예산의 편성·집행을 감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집행상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바로잡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보건복지부 소관

(10시06분)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서를 정리한 심사 참고자료의 내용을 보고받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사항의 내용과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시정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로 다루기 곤란한 내용으로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부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참고자료에 정리된 심사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5건, 질병관리청 42건, 보건복지부 162건 등 총 228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실·국별로 심사 참고자료를 보고하시되 서너개 지적사항을 묶어서 한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인 경우에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각 당의 의원총회가 현재 예정돼 있어서 가급적 저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신속하고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재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과태료는 식품·의약품 분야 관계 법률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비목입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의 유형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이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 필요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주기 관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 목적 및 실제 집행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유형이고 이수진·서미화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약처는 사업 목적 및 실제 집행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송무 대응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필요입니다.

송무지원사업은 송무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하여 식의약 안전행정의 실효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약처 행정소송 패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박지원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송무 대응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것.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과태료 순환 및 제고 방안 마련 필요와 2쪽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제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논의에 따라서 정해진 시정요구유형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송무 대응 전문성 및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향후에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요약하면, 이수진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주의를 3개 다 얘기하셨고 박지원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3개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3개 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

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 의견이 중요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제도개선 수용한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이수진 위원님이 주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이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답니까?

○서영석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우리 쪽의 다른 분 말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제도개선으로 하고, 이수진 위원님이 일단 다 좋다 하시니까요. 세 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번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4페이지, 소비자위해예방국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방법 마련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담배의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특정 제품을 덜 유해한 담배로 오인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유해성분 정보 공개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윤 위원님 등 여섯 분이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백 단축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상 최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시키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담배유해성관리법을 개정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교홍 위원님 등 다섯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담배 유해성분 측정기준 일치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담뱃값 표시와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측정기준을 조속히 일치시키고 단기간 내에 기준 일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두 수치가 달라지는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윤 위원님 등 일곱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3건의 안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세 건 다 제도개선 수용하시겠다는 거고.

따로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식품안전정책국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식품안전정책국, 모두 5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HACCP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정기조사 수행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식약처의 수시조사 및 행정처분 연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으로 박지원 위원님 등 세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HACCP 인증업체의 증가 추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정기조사 위탁 시행 전까지 수탁기관의 조사역량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백종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부적합 이력, 소비자 신고, 위해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 업체 중심의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으로 백선희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스마트 HACCP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구축 비용 지원 확대와 등록업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백선희 위원님 등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9페이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 적정 귀속 처리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HACCP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 조치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주의 유형으로 이수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징수한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국고에 납입한 후 예산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으로 백종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귀속 처리할 것, 제도개선으로 서미화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청사 건립 관리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식약처는 인증원 청사 건립의 지연 방지를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일정 변경에 따른 연차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으로 서미화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 법적 근거 정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제도에 부합하도록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 등 네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7쪽의 HACCP 업체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8쪽의 스마트 HACCP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0쪽의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청사 건립 관리 개선 필요 그리고 11쪽의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정비 필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쪽의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 적정 귀속 처리 필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현재 자체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므로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일단 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데 세 번째,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 수수료 수입 적정 처리 부분에서는 이수진 위원님이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주의로 요구를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도개선이거든요. 혹시 이수진 위원님이 의견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제도개선으로? 안 계셔서 지금……

○서영석 위원 예, 백종헌 위원님 안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은 걸로 됐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말씀하시지요.

○한지아 위원 그런데 왜 제도개선…… 목적 외 사용을 했는데 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그냥 사용을 했는지 식약처에 좀 묻고 싶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이 물으시는 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한지아 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게 지적사항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아셨는지 아니면 모르셨는데 그렇게…… 모르셨는데 그렇게 하면 제도개선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아셨는데 하면 그거는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 관련해 가지고 예결위의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인증원의 내부지침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식약처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5년도에 또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미 한번 예결위에서 지적 받았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내부지침으로 반영토록 지적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결위 지적사항이 내부에서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법 제정 전이라도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한 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했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얘기를 해 주셔서 가지고 현재 법적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결위 지적사항은 법 제정 전에는 내부규칙이라도 만들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히 하신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에 따랐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한지아 위원 내부지침을 만드신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인증원에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말씀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 건 전부 제도개선으로 일단 정리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12페이지,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해외 위해성분 함유 제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반입 규모 대비 검사·차단 실적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성과를 실질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서영석 위원님 등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식품등 위생·안전교육기관 지정제도 및 교육기관 평가체계 개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식약처는 위생·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평가 및 사후관리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기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교홍 위원님 등 네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두 건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두 건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14페이지, 식품소비안전국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튼튼먹거리매장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변화된 어린이 식품 구매환경에 맞게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이고 박지원 위원님 등 세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GMP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 GMP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제형별 선도모델과 표준 구축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보완하며 스마트 GMP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을 확대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 등 네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로 백종헌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3건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추가 의견……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이제 거의 미국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먹거리, 음료 이런 문제가 핵심적인 요인인데 지금 우수판매업소 감소 등 실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혹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식약처에서는, 우수판매업소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문방구가 줄고 편의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튼튼먹거리매장 확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채 같은 것이 많이 비치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튼튼먹거리매장으로 시범사업 하고 향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정하는 제도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답변 되셨습니까?

○김윤 위원 예,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스마트 GMP 구축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약간 목표를 계량화하거나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스마트 GMP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민간 업체에게만 맡겨서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좀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스마트 GMP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중기부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요 중기부 예산을 활용해서 스마트 GMP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기조사, 평가 면제 플러스해서 행정처분 시에도 감면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유인책을 도입해서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이거 갖고는 대책이 안 설 것 같고, 이게 하세월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행 속도도 제대로 안 날 테고 성과도 좀 미비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스케줄들을 좀 만들어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예산 할 때도 그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아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따로 또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시면 식품소비안전국에 대한 3건은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의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국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17페이지입니다.

의약품안전국 3건입니다.

첫 번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율 적정수준 산정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적립금 누적액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윤 위원님 등 세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방법 다각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일반 국민 중심의 기존 홍보를 보완하여 의료인·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 제도 안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대상 및 방법을 다각화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윤 위원 등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현지실사 관련 세입·세출 예산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등 현지실사 수요, 최근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도 중 초과지출승인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이만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3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관련해서 위원님들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자꾸 따져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해서 의사·약사 등이 부작용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는데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고려하면 현재 발견되는 비율, 보고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기 위해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예산사업으로 주요 병원들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별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그런 부작용 수집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하면서 부작용 수집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위원** 혹시 현재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 중에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발견해내는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비올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데요.

○김윤 위원 그러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그래서 지금 KAERS라고 하는……

○김윤 위원 그런 기본 정보 없이 대책을 그냥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너무 믿음이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지금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예산사업을 하는 각 지역 병원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가지고 실마리 정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런 실마리가 감지가 되면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허가 사항에 반영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답변이 충분치 않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또 다른 의견 위원님들 계십니까?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의약품안전국에 대한 내용은 정부 측에서 수용한 대로 제도개선, 제도개선, 제도개선, 3개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약안전기획관실 보고받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19페이지입니다.

마약안전기획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 연도말 집중된 홍보예산 집행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홍보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예산 집행을 관리할 것. 제도개선 사항으로 김윤 위원님 등 네 분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참여 약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급·관리비용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환자 반납유인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서영석 위원님 등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계지원비 지급 방지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복리후생부는 별도로 편성하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 등 세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제한경쟁채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박지원 위원님 등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4건 안전에 대하여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님 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청소년들이 각성이나 집중도 높이는 용도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성분의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복용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오남용 예방이나 이런 내용을 홍보할 때 혹시 청소년 분야를 특화해서 또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홍보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한 것이 있는지 그것 관련해서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이것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약품 오남용 관련해서도 모든 제품이 다 있다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니까, 다이소. 여기 가면 약물들이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약을 사 가지고 마그네슘제네 칼슘제네 이런 내용들의 약물을 아주 전혀 어떤 거리낌 없이 제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일상적으로 복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남용인데 다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제재 조치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식약처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다이소에서는 일반 약을 판매할 수 없고요.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별도의 그런 약물 오남용은 다이소 측면에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에 맞는 시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쇼츠랄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청소년의 시각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오남용이 오히려 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입니다.

말씀 주셨듯이 청소년들의 ADHD나 집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 정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재 ‘뗏 없는 거 하지마’라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어떤 아이디어와 현장 상황들을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위원님…… 서영석 감사님.

○서영석 위원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 이게 2023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1269kg 정도 이렇게 수거를 했는데 작년도도 크게 성과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거가 잘 안 되고 있고 참여 약국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11억 개 정도가 처방이 됐는데 그중에 백 군데 정도 약국밖에 참

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심각성을 인식을 하시고 폐기되는 의약품 또 복용 후에 가정에 있는 의약품들이 남용되거나 다르게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의례적인 사업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말씀하실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마약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다이소나 이런 데서 무한대로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복용이 되는 경우가 그게 결국에 허위 광고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청소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허위 광고나 이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계획이 연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돼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어떤 쪽지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을 하시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사실 상황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얘기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황 변화가 계속 있어 가지고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앞서 말씀하신 ADH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2026년 6월 기준 상반기 집행률이 지금 19.5%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가 12월에 집행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유연하게 대처하다가 사실상 어떤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 없을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게 연간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간 우리가 꾸준히 어떤 홍보 사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아까 ‘뭇 없는 거 하지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캐치프레이즈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청소년 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어디 대상은 어떻게 할지 의료인 대상은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연 단위에서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이게 좀 중장기까지 다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월에 30% 집행되고 28.6% 집행되고 올해는 6개월 동안 19.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요 그 집행으로만 보더라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이 좀 미비한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말씀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계획을 정치하게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 그다음에 평가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인데요. 일단 참여 약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방치 마약류 수거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약의 수거량 비슷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마약류를 수거하는 것은 좀 더 한정적인가요, 아니면 약 수거하는 거랑 똑같은지……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 자체가 방치된 마약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오용하면서 사망사고든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생긴 일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보다 더 유념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약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수거하는 사업을 펼치게 됐던 겁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10개의 약국이 있으면, 10개가 다 약을 수거하는 곳이라면 그중에서 몇 개 마약류만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러니까 마약류에 대해서, 마약류가 보통 약을 처방을 할 때 마약 플러스 다른 약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현장의 편리성이나 수거의 용이성 때문에 함께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이 사업에서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참여 약국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의 목적은 마약을 잘못 복용해서 사망 사고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망 사고의 비율이 떨어졌는지 이런 사업의 효과성 두 가지 좀 여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일단 저희 사업의 확대는 사실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는 좀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병원 등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되셨나요?

○한지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전종덕 위원님 하세요.

○전종덕 위원 마약류는 아니지만 일반 약물 수거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보통의 국민들은 먹다 남은 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처리 과정이 있을 거고 또 이 약을 받아 주는 약국이 있고 또 안 받아 주는 약국이 있을 텐데요. 대체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다 남은 약물은 이렇게 수거하면 됩니까라는 그런 홍보 계획을 세워서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방향이나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사업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이 사용되고 나서는 어떤 폐기물의 형태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하고 복지부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의원실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것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외국의 사례인데 이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 반납의 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전 국민적으로 계몽 운동을 하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개 약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로 생색 내기 용밖에 안 되고 그렇게 전국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사실은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은 행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올해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테이크백 데이(Take Back Day)라고 하는 날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테이크백 위크(Take Back Week)라고 해서 수거 주간을 한 번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지아 위원님도……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여쭙볼 게 2025년 수거량이 520kg에서, 2023년 대비 4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약류 수거 지정 약국의 개수가 좀 줄어든 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대로입니다.

○한지아 위원 그대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한지아 위원 그러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수거량은 줄어든 거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때는 그랬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지역별로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병원 약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국의 분포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거량을 확대하는 어떤 방법들을 동일 예산에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지정 약국은 그대로인데 수거량은 줄었고 그런데 참여 약국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게 논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면 참여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 투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흐름이 잘못됐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흐름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재고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려해서 앞서 천편일률적인 아니면 어떤 약국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사실 종합병원에서 마약류나 이런 처방이 많기 때문에 인근의 약국들을 참여시켜서 약국의 수거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작년, 올해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님 하시지요.

○전종덕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약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약국에서 임의로 살 수 없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마약류 취급도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건데 수거나 폐기 사업을 의료기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개인이 처방을 받아서……

○전종덕 위원 먹다 남은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남은 것을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전종덕 위원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말씀이 뭔가 대폭적으로 줄었으면 뭔가 원인이 좀 분석돼야 되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이걸 결산에서 하시기보다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예산 투입의 방법 논의할 때 아마 조금 더 얘기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가계지원비 비목이 뭔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인건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가계지원비도 인건비는 맞는데, 인건비이기는 한데 당초에 인건비에 없었는데 인건비 수당으로 주는 데 썼다, 이걸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비목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수당으로 줄 수 있는 비목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 인건비 안에는요 급여성으로 봐 가지고 가계지원비로 간 상태인데요. 저번의 지적은 인건비보다는 정상적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약안전기획관실의 3건에 대해서 전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 걸로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생약국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바이오생약국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가 셀뱅크 운영 내실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식약처는 실제 세포주 구축·분양 계획과 조달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교부하고 국가 셀뱅크가 국가 백신개발의 기반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김윤 위원 등 세 분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기안전국 소관 시정요구명으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가사무 수탁사업 수수료 수입의 적정 귀속 처리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징수한 민간위탁사무 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한 후 예산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 유형으로 백종현 위원님 포함 두 분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향후 지적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내용이 위법 사항 아닌가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 쪽이 맞을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아까 인증원도 같은 형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내규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그때도 제도개선으로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지금 식약안전처 안에 이것에 대한 내규가 있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일단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까 그 건은 내부에서 지적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의 규정이 안에 있냐 이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의료기기국장 김명호입니다.

아까 식품인증원과 같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의료기기정보원하고 식약처하고 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식품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다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김윤 위원** 아까 시정요구했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나중에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김용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남 차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권역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감염병 특성을 반영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질병대응센터가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과제의 차별성 등을 위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권역별 고가 진단장비 운영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검사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비 배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센터별로 구매·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인보호구 비축목표 대비 적정 비축 수준 확보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품목별 개인보호구 비축목표와 사용기간 만료 예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보호구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재고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개인보호구의 적정 비축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과 질병관리청은 품목별 비축 우선순위와 사용기간을 반영한 중장기 비축·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만료 예정 물량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두 가지 모두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집행실적, 외국인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두 번째는 외국인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감염 환자에 대한 해당 국가의 치료비 지원 공조의 경우 상대국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두 가지 모두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염병전문콜센터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감염병전문콜센터의 전문성과 상담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내용과 감염병전문콜센터가 평시 운영 효율성과 위기 시 신속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평가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질병청은 다섯 가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이라든지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5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경과와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질병관리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 교부를 중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앞에 것은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것은 주의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면밀 수행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것,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협의 강화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대한 상호 간의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과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정상화 계획과 지연 시 대응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해연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가 예산편성 및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는 주의가 있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유형이 있었습니다.

9번입니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제도의 법령체계 정비 필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 중에서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제도 등 기본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등에 규정하고 나머지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BL3 실습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생물안전 기준과 최근 실험기법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실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함으로써 BL3 실습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6번부터 10번까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그 6, 7, 8번은 그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과 주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께 말씀하시지요.

김운 위원님.

○김운 위원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 충청, 경남, 경북, 수도권 예산액이 215억이 이월됐고요. 23년에 다시 전액 이월, 24년도에도 상당액이 이월됐고요. 호남권의 경우에 2024년에 124억 미집행, 2025년에 188억 이월 이렇게 돼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국회에서 예산이 계속 미집행되고 이월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지금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2017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착공 전까지 걸리는 어떤 단계라든지 절차들이 상당히 길고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라든지 KDI, 기획처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고 그 협의 일정들이 지연되면서 계속적으로 각 5개 권역 병원의 진행, 진척도가 좀 지연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좀 돌아가기 시작한 게 24년도부터는 실집행률이 그 이전에 비해서 확 높아지고 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내년 5월 경에 호남권 전문병원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머지 병원들도 지금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그 쟁점들을 해소하면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감사님.

○서영석 위원 그거는 구축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밑에 7번 항목은 이게 교육부의 재정사업하고 충돌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데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질병관리청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교육부 사업을 신청하면서 일부 부지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어서 사업이 조금 중단됐었는데요. 그 부분은 병원과 그다음에 기획처랑 다 이야기가 돼서 사업을 다 정리해서 지금 다시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권 같은 사례가 있는지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다른 권역의 경우에는 부지 중복은 없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질병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확인이 안 된 거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학교 측에서 저희가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한 그 부지를 교육부의 주차장으로 중복해서 신청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하고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금은 이제 그 부지 중복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감염병전문병원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요. 8번에 경남권 전문병원 관련한 문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거기로 정했었는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했고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협의가 미완료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협의가 미완료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는데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 사업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보조금이 먼저 지원되는 사례라든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지금 협의 그것뿐만 아니라 경북권, 칠곡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미협의를 된 부분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무엇이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마다 조달청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고 또 이제 필요 시 중간에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 이 경남권 같은 경우는 24년도 12월 달에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를

했는데 이제 원래 당초 계획보다 그 부지 면적을 대폭적으로 축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2만 7000 평방미터였는데 1만 7000 평방미터로 부지 면적을 축소하라는 게 KDI의 의견이었고 질병청이나 경남권의 의견은 이렇게 면적을 축소할 경우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KDI의 적절성 검토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제 의견을 보여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그 관련 부처라든지 해당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해당 병원의 병원장, 집행부 공식 상태가 계속되면서 의사결정이 내부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조만간 집행부가 구성이 되는 대로 저희가 협의해서 기획처하고 좀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전종덕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늦어 가지고……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최대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측하고 또 기획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위원님들 의견……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시는 것들은 예산심사 때 당연히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고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지연이 예상되는데 또 예산 달라고 하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심사 때 다룰 얘기고 오늘은 결산에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법이나 과실이 있었는지 부분하고, 그게 제도적인 문제면 제도개선으로 가는 거고 공직자들의 업무에 있어서 무슨 고의적인 과실이 있거나 혹은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주의로 가는, 경미할 경우에 징계로 바로 가는데.

지금 우선 서영석 간사님 주의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 주의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양해를 하시는 건지 제가 우선……

○서영석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수용하는데 여섯 번째 항목하고 여덟 번째 항목은 주의를 요청하신 지금 백종현 위원이 안 계세요.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그러니까 그 두 건은 일단 다시 보류를 하고 나머지 건은 제도개선으로 일단 정리하고 백종현 위원님 오시면 수용하시겠다 그러면 다시 제도개선하더라도 일단 그 두 건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번 참여자 모집 부진 및 오믹스 데이터 생산 지연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연도별 목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목표 데이터가 적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쪽입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의 증축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증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산 편성 시 편성 세부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예상안을 편성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쪽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비임상·임상 단계별 마일스톤과 중단·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200일 내 백신 확보라는 사업 목표에 맞춰 과제 간 연계와 예산집행계획을 재정비할 것이라는 내용과 질병관리청은 비임상·임상 연구의 중첩 추진 구조와 소수 과제 중심의 임상연구 추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과제 이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쪽입니다.

의료방사선의 적정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이용 및 피폭 현황과 관련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과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제도개선에 전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건 모두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부터 21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번, 병원체자원의 확보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병원체자원 관리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핵심 병원체자원의 확보를 확대하고 연구·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쪽입니다.

의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의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근무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의료인력의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C형 간염 검진 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진 이후 확진검사 및 치료로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9번입니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및 이비인후과 확대 지정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진료과목별 분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비인후과 등 참여가 저조한 진료과목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0번입니다.

CJD 부검센터 운영 관련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현행 CJD 부검센터 수행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CJD 부검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을 마련하여 CJD 국가 감시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1번입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체계 내실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중소병원·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제도개선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건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이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 의견 내실 분 있으십니까?

○전종덕 위원 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국립병원 관련해서 여기 17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의료진 확보가 대단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처우와 근무 조건으로는 의료진 확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는 의사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서 정주여건이라든지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등을 포함해서 의료진 확보 방안과 관련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방안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저희가 국립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의무직 인력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인센티브라든지 말씀하신 각종 인센티브에 대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포병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1명 추가 채용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사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마산병원과 같이 인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체계(ASP)의 내실화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입니다.

항생제를 병원에서 적게 쓰기 위해서 주로 감염내과 의사와 약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병원에서 쓰고 있는 항생제 처방내역을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하고 그중에서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변경을 권고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지금 종합병원급 이상 90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 사업을 한 지가?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지금 2년차 사업 중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만이 아니고 2차 병원까지 확대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현재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300 병상 이상 종합 병원까지 먼저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8년까지 해서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로 확대를 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병원급까지 확대를 할 생각이구요. 의원급은 병원처럼 아주 정밀한 수준의 그런 ASP 사업을 하기는 어려워서 심평원과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를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관리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서영석 위원 적절하게 잘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관련한 사업 내용을 의원 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이 300 병상급 이하 병원에서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실제로 문제의 크기가?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300 병상 이상부터 먼저 하는 것은 여기에 꼭 필요한 인력이 약사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 병원에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약사 인력을 구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저희가 항생제 내성 관련해서 전문약사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인력 확충과 더불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 위원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수가가 중요한 인센티브로 사용되는 거라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많지 않아도 대상 기관을 어떻게 보면 쉽게 확대할 수 있으니 내성균에 대한 경고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의 속도를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에 좀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개 항목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부터 26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번입니다.

결핵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임금·고용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3번, 소규모 취약시설 결핵검진 등 지원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재정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고려한 지원 우선순위 및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4번입니다.

의무검진기관 조사 참여율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결핵 검진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의무검진기관의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검진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 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5번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인구 10만 명당 일반 인구 및 집단시설 결핵 발생률보다 높은 가족접촉자 결핵 발생률을 고려하여 가족접촉자 결핵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6번입니다.

결핵 취약계층 검진 지원 체계 유지·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효과를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번엔 결핵 관련 사업들인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5건 제도개선 시정요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추가로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6건에 대해서 제도 개선으로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7번부터 31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7번입니다.

매개체 감시 체계 확대를 위한 재정 기반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감시지역 및 감시 횟수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환경, 감염병 위험 변화에 맞춰 감시지역·주기를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8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지급금 정산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여 누적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29번입니다.

백신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30번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 부담 및 비용효과 측면이나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 순차적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내용과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1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처리속도 제고 필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배경 및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상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보상 기준을 재정립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할 것,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심의 체계 구축과 신청 건에 대한 심의·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여기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시정요구유형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28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거의 통계청의 추정치보다는 행안부의 실제치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추계를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도 26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해서 일괄적으로 전액 회수를 한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29번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주의로?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28번 빼고는 전부 주의·제도개선을 다 수용하신 거고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28번에 대해서만 지금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만희 위원님 따로 의견을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위법사항이

라기보다는 제도개선의 문제로 일단 보여서 이견 제가 이만희 위원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를 제도개선으로 정리해서 갔으면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실제로 이게 대상자 추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를테면 출산율에 대한 예측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최근에 출산율이 저희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가 최근 한 이삼 년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어서요. 그런 단기적인 변화들이 추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새롭게 추계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이 소아·성인 예방접종 다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서 조금 과부족이 있으면 다른 쪽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구조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만 추계 문제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절반을 매칭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연말에는 일정 정도 미지급금 또는 잔액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신속하게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미지급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좀 누적된 측면들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 부분을 이미 다 해소했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1월에 미지급금이 소액이라도 발생할 경우에 바로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태어나는 거나 예방접종 숫자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 것 같고, 차이라 그래 봤자 작을 거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생기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그러면 수용하신 대로 제도개선은 제도개선대로, 29번은 주의로 해서 일단 전부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32번부터 34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2입니다.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추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전문가 협의와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2027년도 사업개편을 위한 후속조치를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밝히는 한편, 현행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의 정책효과를 재평가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3번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사업 참여율 및 참여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질병관리청은 30세부터 64세 사이에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대상에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고혈압·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4번입니다.

암역학조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질병관리청은 암역학조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의뢰 전제 방식에서 국가 주도 조사체계로 개편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및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 시 정량적 이행 실적을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상 4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제도개선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 수용하신다는……

위원님들 추가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이 앞 사항인데,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충분한 보상과 지원예산이 좀 확보되고 예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보상이나 지원 대상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2020년, 2021년 2년에 걸친 백신 피해 보상,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인데도 제대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뭐라 그럴까, 울분?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사업이요. 이게 19개 시군구 대상이 몇 년째예요? 몇 년째 19개 시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저희가 19개 시군구가 된 거는 2012년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19개에서 시범사업이 정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지금 14년째입니다.

○서영석 위원 예?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14년째입니다.

○서영석 위원 14년째 시범사업만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확대하거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그래서 이게 19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14년째 시범사업이 유지되는 것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고·당사업 간의 연계라든지 유사·중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금 기획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기능을 확대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14년째 시범사업만 계속하고 있고 확대도 안 하고 연말에 가면 재정도 다 떨어져 가지고 아우성이고, 이것 개선은 해야 되지 않아요?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만성질환관리국 오진희 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의료비 지원 부분 때문에 사실 확대가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건강보험재정 쪽으로 연계를 하고 그리고 연령도 30세 이상만 하고 있는데 전체 연령을 확대하고 그리고 대상 기관도 19개에서 확대해서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감 전에 저희가 방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암역학조사 관련해서 백종헌 의원실에서 주의로 올려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제 김영상 보좌관님과 통화를 해서 설명을……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금 몇 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3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역학조사 제도개선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확장하고 싶은데 사업 중복성 때문에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질적인 이유가 하고 싶은데 돈을 못 받아서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복지부나 다른 쪽과 예산 중복 때문에 예산당국에서 안 줘서 계속 그 돈밖에 안되니까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당국에서 사업 중복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의료비 부분은 건강보험재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센터만 남기면 확대를 해 주겠다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당국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부안에 확장을 담아서 가려고 지금 일부를 넣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여기 위원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관계부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셔야지, 그냥 관계부처 간에 안 됐으니

까 그냥 안 되는 거로 계속 가면 14년째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다면 간사님이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예산심의 전에 잘 설명 드려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건도 전부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하시고 이제 남은 문제가…… 백종현 간사님 오셨는데, 앞에 6번·8번 주의로 의견을 주셨는데 제도개선을 수용한다고 했어요. 주의를 계속 요구하시면 논의를 좀 더 하시고요. 그냥 제도개선 수용하신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제도개선은 수용하고 지금 24년도 회계연도 결정에서 시정요구조치 완료라고 보고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조치하고 나서 지자체 조사 의뢰가 앞으로 몇 건 발생할지 예상 같은 건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몇 번에 대해 물으시는지, 이쪽이 잘 이해를……

○백종현 위원 34.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34번 얘기하신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양해는 했는데 개선사항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암역학조사는 지자체에서 질병청으로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지자체에서 암역학조사를 요청한 사례가 없어서 매년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 암 발생에 대비해서 예산은 항상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불용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교육훈련, 암역학조사에 대한 교육훈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자체별 민간전문가들의 역학조사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예산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행실적이 없이 완료 표기가 가능한 지금의 프로세스를 개선하실 생각은 있으시지요?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까지는 암역학조사가 지자체 의뢰가 와서 꾸준히 했었는데 2018년 이후에 신청 자체가 좀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니 환경보건법이라든지 산업보건법에 조사 이후에 구제절차까지 가는 법들이 완비되면서 지금 저희 쪽으로 요청 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환경부나 산업 관련된 부서로 요청이 가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제는 아니더라도 그전에 전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는 필요한 게 암역학조사를 이 지역에 특별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에서 좀 반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이제까지 약했던 부분도, 예산 불용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좀 더 해서 필요시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8년간 지자체 의뢰가 사실상 없었잖아요. 그러면 의뢰 전제라는 설계 자체가 틀렸다는 결론이 나기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년 동안 신청 자체가 없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가습기살균제나 이런 사고가 있으면서 조사를 한 기관이, 가습기살균제는 질병청이 조사하고 환경부에 넘겨서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조사를 한 기관이 구제절차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구제까지 연계되는 쪽으로 신청이 많이 가고 저희한테는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는데 저희가 가서 이 지역은 암 발생률이 높은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하겠다 하면 그 지자체나 지역주민들 반발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자체와 같이 조금 조율하고,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등록사업이나 조사사업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니까 국가 주도 조사체제로 바꾸려면 암관리법 개정이 필요한지와 또 예산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편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시면……

백종현 위원님 6번 항목, 8번 항목 주의 요구를 하셨는데요, 앞에.

○**백종현 위원** 보고받았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도개선으로 양해하시는 거지요?

○**백종현 위원** 예.

○**한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한지아 위원님 또 하시지요.

○**한지아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특별법 시행준비 지연으로 인해서 그런지 지금 피해보상금 72%가 불용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따로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차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윤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따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장님을 비롯한 질병관리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점심 중식이 있고 오늘 민방위훈련이 있고 3시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한 후에 속개 시간은 본회의 산회 시각을 고려해서 다시 행정실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1차관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차관님 외에 배석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목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첫 번째, 기획조정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명, 환수율 저하와 부정 규모 확대에 따른 복지급여 사후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재발방지 등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환수율·환수액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환수 중심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등 위험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 요구 규모 축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반복적인 반납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세 가지 모두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구과제 수요조사와 선정절차를 조기에 추진하고 계약 기간을 고려한 연간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연말 신규발주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미처분잉여금 관리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처분잉여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처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때까지 출연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 다 수용합니다. 세 건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이수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없어요.

그러면 1, 2, 3 기획조정실 건은 제도개선 다 수용하신 걸로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다음으로 4페이지 연금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 재정립 및 기초연금 감액 구조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초연금 감액 구조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를 검토할 것. 시정요구유형으로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 외 활용 최소화 및 재정수요 정밀 반영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 외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초연금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 사업의 신속집행 대상 제외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지 아니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실집행잔액 적기 반납 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실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 등 실집행잔액의 적기 반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실효적 수단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 강사 인력풀을 지속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발·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강사 1인당 강의횟수·활용률 등 성과지표를 용역계약에 반영하여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강사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7번까지 다 하시지요, 7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국내·국외업무여비 적정 소요 반영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집행실적,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내·국외업무여비의 적정 소요를 사전에 선정하고 반복적인 자체 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을 강화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연금정책관실 7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다 수용하는데요, 한 가지만…… 3페이지의 연계감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초연금 개편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이랑 같이 함께 볼 건데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이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반 그리고 전체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으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엎것을 흔히 A값이라고 하는데 A값이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이 A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전체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A값도 소득재분배 기능이고 기초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부 감액 가능하지만 5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득재분배 기능의 중복이 과다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제도의 기본틀을 가지고 가고 대신 저희가 기초연금 개편할 때 국민연금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말씀이 있었고.

이수진 위원님,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이수진 위원 어쨌든 기초연금 관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절반, 50%를 감액하나 봤더니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50% 감액을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집 한 채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없고 그러면 국민연금 52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연금 액수가 늘어나시겠지요,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당장 개선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체계 내에서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정이나 재설계 이런 개선방안은 좀 마련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연계감액이 일정 부분 필요하나 그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연금 수준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획에 어느 정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4페이지 4번 하고 있고 간사님도 단계적으로 조정·재설계, 조금 더 주는 걸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부차관님 말씀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수진 위원님이 그렇다면 장기과제로 해

서 부대의견을 다는 결로 안을 내셨거든요. 또 추가 의견 내실 게 있으신가요?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이게 하후상박을 하려면 결국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설계를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증가분과 또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국민들에게 설득을, 설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절충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인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령인구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것을 설득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설계가 되지 않으면 국민 설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중장기적’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여기서 제도개선 놔두고 부대의견을 다는 건지 아니면 제도개선 없이 그냥 부대의견으로 가는지에 대한 정리도 하나 필요하고. 부대의견 문구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야 일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다시 문구 다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한번 내 보시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구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의견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연금정책관실은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시정요구한 대로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는 결로 하고 부대의견 문구는 수석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결로 하고 노인정책관실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노인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청구 문제 해소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청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사후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 이상청구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하고 공급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구조적 통제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과태료 체납 정리, 불납결손 정상화 및 강제징수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과태료와 관련하여 체납 정리와 불납결손 정상화를 노력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유형입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두 가지 다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신다는 거고.

위원님들 혹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인정책관실의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하세요.

○이수진 위원 저희가 이미 자료 검토한 바도 있고 수용 의견으로 정부에서 의견을 준 것은 제목만 보면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좀 더 신속하게, 어쨌든 기본은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셔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관 13쪽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정착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성과 법 개정 이후 신청 수요 증가 추이가 지원단가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사업 이관된 재외동포청에 충실하게 인계할 것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5쪽입니다.

5번, 노인학대 대응인력 인건비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고 쉼터의 업무량과 이용 실적을 분석하여 겸임인력을 전임인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부식비 관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냉방비 지원기간을 실제 온열질환 발생시기와 기상 여건에 맞게 확대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요구사항과 균형 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식비 지원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번,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참여 관리 및 질적 고도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유형별 중도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참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수요 기반 직무설계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8쪽입니다.

8번,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의 저소득 노인 지원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의 소득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동비 수준을 현실화하며 현행 11개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번,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연계율 원인 분석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모집·연계율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여기까지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하고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10번부터 13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실비성 비용 지원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활지원사 등에 대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성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인력 운영 방식 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번,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축 지원단가 현실화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장기간 동결된 건축 지원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 부지·지방비 확보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번, 응급관리요원의 적정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비 수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해서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교통·통신·출장비 등에 대한 공통된 지원기준과 고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3번, 예비비 적정 규모 편성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예상 대응기간과 실제 투입인력을 면밀히 산정해서 예비비를 적정 규모로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7번까지 그냥 다 한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치매안심센터 법정 전문인력 확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성과를 실제 전문인력 충원 및 서비스제공 수준까지 연계·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지역별 인력 부족 원인을 분석해서 충원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5번,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실행률을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자체의 사업 준비도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여 실행률을 제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6번,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노인 개안수술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의 신청 추이와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7번,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 분석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요실금 치료지원 내역사업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분석·평가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신규 사업 편성 시 실제 현장 수요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7번까지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7번까지 정리를 이렇게 하고 인구아동정책관실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볼게요.

24페이지 14번 치매안심센터 법정 전문인력 확충이 지금 38.7%밖에는 안 됐어요.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각 1명 이상인데 농촌지역은 또 24.1%고. 그러면 인력 부족을 제도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충원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 제도개선한다고 그래서 쉽게 제도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제일 부족한, 충족률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중에서 임상심리사인데요. 저희가 도시나 농촌이나에 따라서 지역별로 인구구조를 고려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현재는 인력기준도 하나고 유형도 하나인데 유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조금 달리 하고 기능에 맞춰서 인력기준을 달리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임상심리사만 부족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충족률이 떨어지는 게 지금 임상심리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작업……

○**이수진 위원** 구체적인 건 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께 따로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진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 문구가 정리가 돼서 부처하고 협의가 됐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협의가 됐는데 괜찮으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부대의견은 이렇게 문구를 정리하는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와 사업 미참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아동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며 시설 퇴소 이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고용·복지 사업과 연계한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자립수당 지급대상의 적정한 추계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호종료·보호연장 아동 및 실제 신청·지급 실적을 반영한 지급대상 추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에 반영하며 연구용역비의 전용·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0쪽입니다.

3번,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운영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퇴직 원인, 공백 발생 여부, 처우 수준 및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장기근속 및 인력공백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산정 방식, 의료이용 실적, 홍보 및 안내체계 등을 점검하고 사업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2쪽입니다.

5번, 가정위탁·입양 아동 수요의 적정한 추계기준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신규 보호아동 발생 규모, 기존 지원이력 등을 반영한 수요 추계기준을 마련하고 연도 중 실제 집행상황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실집행 중심으로 국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번, 공적 입양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복지부는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과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보연계 및 통합사례 관리체계와 지연사례 점검·조정 절차를 마련할 것. 두 번째는 가정환경조사 및 적합성 심사 인력·조직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열 번째까지 하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7번,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자산형성기능 제고 방안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합 환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신규 대상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민간후원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할 것 내용이고. 적립률과 미적립률 등을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개선할 것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입률·저축률을 고려한 실수요 기반 예산 편성할 것.

세 가지 다 제도개선입니다.

8번,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여부, 시설 확보 절차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거점 심리지원센터 인력 충원 등에 노력할 것,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였고.

두 번째로 유사한 내용인데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예산 추계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시정요구 유형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쪽입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성과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호출산 지원 수요 산정 방식과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통계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교부액 산정 방식 등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상담·서비스 연계,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것 내용이 있었고 수요 기반 예산편성을 하고 인력배치체계를 정교화할 것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번입니다.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는 다 수용인데요.

35페이지 8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거점심리센터 인력 충원 관련해서 이수진 위원님 주 의 주셨는데 저희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별로 골고루 신속히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집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그걸 고려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유형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 다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한 가지, 7번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산 형성 있지요. 이게 민간이나 이런 데서 매칭이 안 돼도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지요? 바뀌었나 요? 어떻게 됐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입니다.

27년 예산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6년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26년도에 높아졌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26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관입니다.

2개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건보공단·장기요양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할 것, 요구사항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재택의료 참여기관 및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적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따로 위원님들 의견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통합돌봄 관련해서 통합돌봄이 3월 달에 시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방정부가 약간 전환기라고 해야 되나요? 교체되는 시기에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조한 상태에서 출발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지자체장들이 새로 선출된 상태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교육을 한 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수준이 많이 달라 가지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인식도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장관님 명의로 새로 시작하신 전체 자치단체장님께 이 통합돌봄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지원이 차등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편지들을 보내 드리기도 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을 하반기부터 계속 죽 뽑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통합돌봄의 취지를 잘 알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만 가지고 안 되면 행안부의 협조를 좀 받아서, 해당 공무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자체장들을 좀 교육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공조해 가지고 단체장들이 인식을 정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 총 15건 가운데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준중위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세부 산정자료와 주요 논의·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 및 환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 개편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실제 가구소득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선제 발굴 및 타 급여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계급여와 타 급여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과오수급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계급여와 관련해 사전예방 중심의 과오수급 및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소득공제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소득공제 예산편성 시 최근 가입 추이나 실제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실적인 수요를 추계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상 5개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6번부터 10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근로소득공제 지원제도의 목적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을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공제할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탈수급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관련 이·전용 및 불용 반복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계급여 예산의 이·전용 발생 사유를 유형화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대규모 불용 양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재산 소득환산제 및 자동차 기준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계급여 재산의 소득환산 시 재산의 실제 유동성과 생활 필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빈곤층의 이동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예산추계 및 재정운용 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추계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의료급여 부담청구와 관련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 다 수용인데요.

4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그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이나 집행관리 강화하는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런데 투명한 중장기 재정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료급여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고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확대가 결국은 재정 당국과 협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 좀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문구 수정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요약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이 부분을 복지부가 그냥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수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수진 위원 늘 있는 문제라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리를 하시고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다음 진행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의료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런 행정위도 AI 시스템들을 동원해서 조금 더 과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가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안을, 발달된 과학기술을 잘 동원해서 업무 편의성도 증대시키고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이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이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쓰는 시스템으로 부담청구를 감지했는데 저희가 의료급여에 특화된 고도화된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 한 가지만요, 지금 9번에 2025년 작년 서울시가 법정 의무지출인 의료급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201억 1200만 원이 기금편성 못 댔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서울시 어떻게 했어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복지정책관 김문식입니다.

올해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지방정부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산 확보가 됐어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진행하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11번부터 15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연계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의 부정·부적정 수급 축소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공적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교화하여 긴급복지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축소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수요 예측체계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주요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예측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가능성 확인 필요에 관한 것으로 시정요구사항은 보조금 교부 전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자활성공지원금 미집행 교부액에 대한 반납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입니다.

탈수급 실적 관리 및 근로요건 확인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지표에 탈수급 및 자립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근로요건 확인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 수용하시겠다고……

위원님들, 혹시 또 추가로 의견……

백종현 위원님.

○백종현 위원 차관님, 희망저축계좌 유형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수령자의 탈수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장 김수환 자활정책과장 김수환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여서 생계의료 수급자 가입 대상인데 작년에 탈수급률이 32% 나왔습니다.

○백종현 위원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면 산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수치인지요?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장 김수환 희망저축계좌Ⅱ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탈수급률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탈수급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 시스템을 타할 게 아니고 산출할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장 김수환 저희가 산출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희망저축계좌에는 주거랑 교육급여 차상위가 대상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관리하는 의미가 크지 않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백종현 위원 측정하면 드러날 결과가 부담스러우니까 측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복지정책관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통장 사업을 운영하는 최종 목적이 결국은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성과지표도 탈수급률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계좌유지율 있지요? 그 성과지표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택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장 김수환 저희가 처음부터 계좌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가지고 관리해 왔습니다. 22년부터 관리해 왔습니다.

○백종현 위원 지표설계 단계에서 탈수급률이 검토됐다가 배제된 것이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장 김수환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희망저축계좌Ⅰ은 탈수급이 지급 요건인데 나머지 두 계좌는 탈수급이 지급 요건이 아니다 보니까 계좌유지율을 성과지표로 정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 사유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두 계좌의 수급자 출신 만기 수령자 탈수급료를 지금이라도 소급 산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 탈수급 요건 신설이나 인센티브 재설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현행 지표인 계좌유지율 이것을 앞으로는 탈수급률, 그러니까 기초생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Ⅰ과 Ⅱ는 탈수급이 목표이기 때문에 탈수급률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탈수급률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더 탈수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복지행정지원관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사업계획 마련 등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연령별 고독사 위험요인 및 대상자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규모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광역 단위 전문지원센터 설치 등 전문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별 인구·위험도·수요를 반영한 자원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 중심의 공통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한편 부진지역 개선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3건 모두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정보화 사업의 종료 시점과 잔여 소요액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의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반복적인 전용이나 내역변경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확정된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사전 수요분석 및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사업설계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사업의 편성 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규모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의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방식을 수립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저희 다 수용인데요.

57페이지, 백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자체 인력지원 사업 편성 시 제출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의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있었는데 원래 고독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는 고독사 특화의 문제가 아니고 생계, 질병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 있는 통합사례관리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처에 요구했던 건 통합사례관리로 예산이 확대되는 거였는데 이때 고독사가 워낙 부각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판에 고독사 사업으로 분리가 되면서 미처 수요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26년 사업부터는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유형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처음에는 주의가 맞다 하셔 놓고는……

차관님, 지금 복지부 소관 사업 중에 국회에 예산안 제출 전에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절차나 지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의무화한 지침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사업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렇지요. 다섯 차례 조사에서 수요가 48명으로 일관되게 확인됐는데 전용 등 잔여 예산 활용 방안을 검토하거나 집행 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끌고 간 이유가 있는지요? 그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복지정책관입니다.

차관님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뒷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간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시간들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 목표량에 맞추도록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독려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까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수요가 없다는 게 확인된 시점에서 예산을 늘리지 않는 그런 수단이 복지부에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안 쓴 건지…… 차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산이 편성됐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지자체 수요조사하고 독려해서 집행을 했지만 이게 독립된 사례관리로는 사업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25년이 아닌 26년 올해 사업부터는 독립된 사례관리가 아니고 시군구 단위 통합사례관리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올해부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전에 수요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할, 지침에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예산안 제출은 그 자체로 국회 심의권을 형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문화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백종현 위원**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백종현 위원** 명문화할 수 있는 사항이면 명문화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게 요구하시는 건 주시고, 만약에 주의를 제도개선으로 하려면 내부적으로 사전조사를 명문화해서 넣어 달라고 하는 게 지금 백종현 위원님 요청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실 때까지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고독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온 게 청년의 자살과 고독사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사후에 자살자나 고독사를 한 사람들이 징후가 있을 걸로 보여져서 그런 경우에 저한테 제안을 한 것은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을, 하여튼 이 디지털 기기의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자살이나 고독사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조금 더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제안을 전문가들이 해 오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구축을 하는 그 사업 안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아마 자살 사후 심리부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고독사 중에 자살은 한 13%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병사·아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살 심리부검 부분은 저희가 자살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가서 2차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핸드폰 같으면 그것을 분석할 수 있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될 테고 소유 개념도 여러 가지 어떻게 규정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좀 조사를 해 주시거나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48명에 그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뽑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지, 혹시 사후에 평가를 좀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예,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 과정에서 좀 뒤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인력을 채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아니요, 지금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합쳐져서 그 안에서 고독사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80명 넘는 인원들의 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져서 결국에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김문식 인력 채용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좀 목표 달성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십니까?

일단 복지행정지원관실의 첫째·둘째 사업은 수용하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세 번째 사업은 지금 사정을 얘기하셨지만 백종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산 신청 전에 그 예산 신청에 따르는 기초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내부적으로 사정은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하겠다라는 걸 규정을 하면 제도개선으로 가시는데 그런 걸 할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주의를 요구하시겠다는 게 백종헌 위

원님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현재 결론이 안 나면 보류하고 다음 진행을 하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그러면 위원님, 이 사업은 없어졌지만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합쳐졌으니까 통합사례관리 사업에서 그 부분을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백종현 위원 명문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 사업도 일단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음,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고위험 분야 정밀 관리 등을 통해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 집행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대체인력 지원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맞게 집행하고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은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 확인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지역별 집행률을 지속 점검하는 등 실집행 중심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증액분의 집행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예산 및 서비스 통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일상돌봄서비스의 수요 변동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수용하시겠다고 했고.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한 가지 좀 여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관련해서요, 2번 사항인데요.

이게 행정인력이 없어서 전용, 연구와 위원회 수당으로 활용한 건지 아니면…… 원래 취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들의 휴식권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수요가 좀 적어서 다른 연구와 위원회 수당으로 사용을 한 건지 그걸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안에 지금 한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비랑 회의 개최할 때 드리는 수용비 같은 수당 성격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연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인력 지원 안에 있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대체인력 관련해서 매년 연구를 할 만한 수요를 사실 찾기는 어려워서 아마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돌봄인력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라고 매년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인력 지원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먼저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처우개선위원회 수당은 다른 수용비로 이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목이, 전체 연구용역 예산이 국 전체에 합쳐져서 앞으로 그런 우려 사항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이게 대체인력이 지금 없어 가지고 되게 어렵잖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실제로 휴가도 못 가고 가면 그 공백이 생겨 버리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도 못 가고, 교육을 받으러 가면 또 공백이 생기고.

그런 게 연구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부족한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건데 연구를 한다는 명목으로 일을 안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 집행을 안 하고 계속 그런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대체인력이 없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대체인력 부족의 문제는 중요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68억 예산으로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랑 시·도대체인력지원센터에 인력을 채용하게 해서 대체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 안에 저희가 연구비 1억 원이 있고 모니터링비 2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다른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연구비로 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연구비는 아예 목을 바꿨고 이 연구용역비 1억 중에서 제목이 대체인력이 아니고 돌봄인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주의해서 제도개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백종현 간사님.

○**백종현 위원** 추경안 국회에 제출할 때 17개 시도에 지방비 매칭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사업에 따라서 문서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60페이지인데, 기존 사업 체계를 활용하는 수요

증가분이거든요. 준비기간 부족이라는 해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해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집행 원인이 지방비 검토 누락 하나로 좁혀집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편성된 다른 추정 사업들의 지방비 확보 실태를 점검해 보셨는지 또 이 사업 하나의 문제인지 추정 편성 프로세스 전체의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 남은 실집행 잔액이 반납되었는지 또 지자체에서 이월해서 쓰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추정 심사에는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 확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다음, 장애인정책국 소관입니다.

장애인정책국 소관은 총 22건으로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소요 추계 및 집행점검 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유형별 인원 변화 등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여 급여 소요의 추계와 집행점검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의 일반연구비 집행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연구과제 선정·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반연구비 집행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누적 미지급금의 조속한 해소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도별·지역별 미지급금 규모와 발생 원인을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예산 반영 등을 통한 해소 일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요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육아휴직 예정자 사전 파악 및 휴직 개시 전 채용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대체인력 채용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반복적인 예산 조정에 의존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연구수요는 해당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률 제고 및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및 장기 미이용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기간과 사유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서비스 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2개의 시정요구유형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부 수용하신다고 하시고.

위원님들 따로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7번부터 12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활동지원기관 급여비용의 임금 사용 관리 강화 및 75% 권고기준 적정성 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활동지원기관별 급여비용 중 임금 사용 비율과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급여의 집행관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 해소 및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재점검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별도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수요 추계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 원인 점검 및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와 이용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대기자 관리 및 지원단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대기자 발생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을 점검·분석하여 대기자 해소 및 종합적인 사업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미지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지정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부담과 현행 개소당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해소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기 수요가 집중되거나 제공기관별 수용 부담이 큰 지역을 우선하여 제공기관 확충과 운영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급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기수요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사업 기반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종사자 및 제공기관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정교한 인프라 확충 전략을 추진하며 실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하 6개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종현 간사님.

○백종현 위원 전년도 실집행률이 13%까지 떨어져 있는 유형에 추정 증액을 결정할 때 이용자 확대 전망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몇 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몇 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금?

○백종현 위원 13번.

○서영석 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금 12번까지입니다. 아직 해당 아니신 거지요?

○백종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문위원님, 13번부터 계속하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다음 13번부터 18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 사업의 유형별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단기적인 집행 개선과 중장기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반을 함께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실제 제공 기관 및 인력 확보 가능성과 사업 준비기간을 반영하고 지역별 신청·미신청·미선정 사유 및 서비스 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개의 시정요구유형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개인예산제의 활용 가능 서비스와 바우처 전환·연계 방식이 참여자의 실제 욕구와 이용 행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반복적인 목표 미달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식 재검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사업의 목표 설정과 집행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 기능보강 사업과의 국고보조율 차이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별 재정 여건을 점검하여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인력 확보 계획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설계·공사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보강 일정과 인력 채용 계획을 연계하는 한편 현장의 추가 인력 수요 등을 토대로 지원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독립성·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체계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주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상 6개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에서 수용했고요.

백종현 간사님 아까 13번.

○백종현 위원 전년도 실집행률 13%까지 떨어진 유형에 추경 증액을 결정할 때 이용자 확대 전망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아까 제가 좀 빨리 질문했는데 13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위원님, 이게 도전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작한 1 대 1 사업인데요, 이게 대기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하기 전에 시도의 의견 조회를 했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막상 시도가 하고 싶은 만큼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실집행률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사자의 전문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단가도 시

간당 3만 1000원까지 인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됐고 전체적인 집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종사자는 늘었는데 제공 기관 때문에 아마 이용자가 못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부 광역단체는 24시간 제공 기관이 단 1개소. 광역별 제공 기관 확충 목표와 연차 계획이 존재는 하는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백종현 위원 존재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현 위원 대기자 명단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대기자 명단 정확하게 1단위까지, 한 명 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받지 못하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이 광역별로 몇 명인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해 주시고, 광역별 제공 기관 확충 로드맵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못 쓴 돈이 아니라 못 받은 사람 기준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예, 대기자를 없애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따로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고요.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19번부터 22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 점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공백 방지를 위한 수행기관 신청 자격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애인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수행기관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조견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확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체계 보완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 특성과 생활 여건 등을 내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지원 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의 사업 내용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건립 진행 사항 중심의 현행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현재 사업 내용과 정책 목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4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다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 수용하신다고 했고, 다 제도개선이고.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 4건은 그렇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 음 것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건이 1차관님 마지막 소관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현수엽 맞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지금 2차관이 아직……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직 안 끝났잖아요, 1차관님께? 끝났어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여기서부터 2차관입니까?

아, 건강보험정책국부터구나. 헛갈렸네. 아직 안 오셨어요?

오고 계시는구나.

어서 오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안녕하십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2차관님 수고해 주시고요.

이전까지 1차관 소관사항을 심사했고요 따로 보류 사업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2차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건강보험정책국 6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법정 기준 준수,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관련 수입 추 계 정확도 제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 선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 국 고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동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 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지원의 경우 담배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해 법정 지원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와 재원 구조를 재검토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적기 행정처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기에 처분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수납 사유별 체납관리 및 강제징수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과징금 수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세 번째로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적용 관련 정확한 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대상·참여 기준 정립 및 간병인력 관련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 대상과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력 확보 및 간병인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네 번째, 88페이지입니다.

계약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지양 및 관련 제도개선 협의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긴급성을 이유로 한 계약변경 방식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긴급사업에도 경쟁성과 신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계약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통한 과거 미지급금 상계 중단 및 미지급금 정산 내역사업을 통한 단계적 미지급금 해소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정산 내역사업을 통해 중장기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지급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과거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관행은 중단하여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료 추계 정확성 제고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료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도 중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전용이나 예비비 등 적법한 재정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당해 회계연도 비용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상 6개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에서 복지부 의견이 제시된 대로 다 수용입니다.

다만 1번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주의와 제도 개선이 2개가 있는데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국고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또 그 확대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또 25년도에 담배부담금 수입이 예상액 대비 감소하면서 미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원 구조도 지금 현재 건강증진기금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고 지원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또 일몰 규정 삭제를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들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요.

제도개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수용을 하는데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주의 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특히 정부 지원 기관 일몰에 대한 개정안 통과를 신속하게 복지부에서는 조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의랑 제도개선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금액은 계속 늘었지만 사실 19년 동안 한 번밖에 14%를 못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해도 아마 복지부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재정 당국과 매년 협의를 하는데 재정 당국이 매년 14%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하게 국회에서 주의를 줬다라는 걸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지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솔직하게 주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증진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게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65% 한도로 인해서 법정 지원율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현실성에 맞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복지부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것 못 맞춘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아니면 개정안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위로 가서 이렇게 재정 당국과 협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감사님.

○서영석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마치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우라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어서 비율을 못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채같이 계속 쌓아 뒀서, 10년, 20년 계속 쌓아 뒀 가지고 나중에 받을 것도 아닌 걸 쌓아 놓고 이것 어찌자는 거냐, 배 짜라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정 당국과 이렇게…… 아니면 아예 진짜 법을 바꿔서 14% 이내, 20% 이내 이렇게 되니까 재정 당국은 그 이내로 준 것이 적절하게 줬다, 12% 준 게 적절하게 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받을 사람은 20%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줄 사람은 충분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선을 그어서 정 안 되면 정말로 특단의 대책으로 12%면 12% 하든지 아니면 20%를 했으면 20%

를 지키든지 그렇게 결단을 해야지 이게 마치 주지도 않을 사람한테 받을 것처럼 계속 누적 적자로 놔두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이것은 재정 당국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안고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들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4% 재정 지원 기준을 맞추지 못함에 따른 누적적인 지원 부족액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단년도 주의로 해서 매년 설정을 하고 건강보험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도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예산을 두고서 다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높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고 거기서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듭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예산 결과는 그렇게 편성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서 건전하게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2개가 같이, 다르게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나를 맞춰 주십사 하는 거고요. 한지아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는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일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이상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몰에 대한 부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그 법안들 모두 다 여당 의원님들끼리, 세 분이나 내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정부에서는 빠르게 드라이브를 안 거신 것 같아서요. 그거라도 해서 14%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왔는데 안 됐으니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년에도 또 반복이 되면 내년에는 주의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고 법을 빠르게 추진을 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하는 노력으로 가고 그게 아니면 내년에는 어차피 복지부가 재정 당국이랑 협의해도 12%에 머물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에 남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백종현 간사님도 주의 말씀하셨는데……

○**백종현 위원** 한지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제가 수석님한테 여쭙보고 싶은 게 이게 처음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온 건 아니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예, 계속적인 문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 하고 나면 돌아가서 또…… 저도 옛날에 다 해 봤지만 주의 몇 개나 제도개선 몇 개나가 제일 중요하고 사실은 주의 받았다 그래도 별로 긴장도 안 해요. 징계나 시정 가 줘야 사실은 공무원들이 약간 긴장하지 주의 두세 개, 제도개선 열 개 이래 봐야 기조실에서나 체크할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현실인데 또 제도개선 해서 그냥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내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각심이 있는 건지 재정 당국에 얘기해 봐야 어렵도 없는 얘기니까 하나 마나 한 거니까 그냥 적절하게 가자는 뜻인 건지 사실 제 느낌은 고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2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 좋은데 2차관님, 노력하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게 의사록에 들어가 있고 예산 심사할 때 다 반영될 거거든요. 일단 한지아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다만 2차관님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는 예산 심사할 때 다시 저희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다 정리하고요.

○한지아 위원 잠시 또 한 가지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말씀 있으십니까?

○한지아 위원 간병비 3번 항목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5.2조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5.2조가, 5.3조요. 죄송해요. 5조 37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2차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을 하게 돼서 그게 1 대 2.5였나요? 간병인 1명당 환자 3명인데, 2.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병인력을 썼을 때 그 주변에,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500개에 포함되지 않는 요양병원에서,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1300개에서 1400개 되잖아요. 나머지 요양병원에 간병인력이 다 풀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이제는 또 그런 간병비가 지원 안 되는 요양병원으로 쫓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돌봄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간병비가 지원되는 500개의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적인 흐름 그리고 통합돌봄까지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5.3조 정도 드는 건데 5.3조 재정 투여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재정을 못 받는, 예산을 못 받는 요양병원들과 요양시설 그리고 통합돌봄, 지역사회 돌봄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요양병원은 2차관 소관이고 요양시설과 통돌은 또 1차관 담당인데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일단은 없이 이 5.3조나 되는 금액을 사회적인 파장도 생각하지 않고 집행이 되고 설정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노인장기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급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적절한 단계적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1300개 정도 되는 요양병원 가운데 500개 정도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병원들을 설정할 거냐 하지만 저희들은 생각건대 의료 역량이 높은 병원도 얘기하지만 의료 간병 부담이, 수요가 높은 환자, 보통 의료피로도도 높은 환자들은 한 8만 5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병상은 24만 7000개, 약 25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고의료피로도도 있는 분들이 8만 5000명 되고 저희들이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월 간병비 300만 원에 본인부담률을 30% 가정했을 때 나오는 계산이고요. 이 부분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단계

적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조정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요양병원들이……

○한지아 위원 단계적 접근이 뭐지요? 단계적 접근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요양병원들은 500개를 바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료피로도 및 요양피로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의료 역량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데 대해서 시범사업 같은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들이 염려하는 한쪽에 쏠릴까 봐, 선정된 병원에 쏠릴까 봐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한지아 위원 500개의 요양병원이 나온 이유가 그 8만 5000이라는 숫자에서 나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보는 환자가 지금은 1 대 6 이렇게 된다면 이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들이 그쪽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정했으면 나머지 500개 외 요양병원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통합돌봄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역할에 따른 간병 소요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500개에서 5.3조 정도 드는 것을 나중에 더 확대할지 줄여야 될지 이것에 대한 예측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부가요. 없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청사진이라고 하시면 아주 완벽한 청사진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단계적 접근을 해서……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 단계적 접근이 조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를 급여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할 거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립하고 또 진행·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급여 대상과 참여 기준 명확히 하고 간병인력 확보 및 간병인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대책 보고하시는 걸로 하고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다음으로 보건의료정책관 2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 예비비 편성에 대한 주의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투입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유형은 주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전 준비를 통한 예산편성 및 실집행 관리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신규 보조사업 편성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에 앞서 고액배상 특화보험의 실제 가입 수요와 보험료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대상과 사업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며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

금을 집행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두 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개 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주의로 하고 두 번째 것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정리하고 다음 의료자원정책관실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의료자원정책관, 우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예산 추진 상황에 따른 단계적 지원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책대상자의 참여 규모나 사업 수행 여건이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과다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이고 시정요구유형으로는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는 연도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수련병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이며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두 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두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용입니다.

그런데 94쪽, 한지아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저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환경 전반을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은 이 예산을 전공의의 인건비 수련수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공의의 수련수당은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등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을 그렇게 전공의 수련수당으로 주기는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늦게 집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받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어느 과들은 5억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준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회의비나, 아니면 학회를 가더라도 하시겠지만 국내 학회는 비싸지도 않고 국외 학회에 가는 것은 마땅한, 그건 시기에 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5억을 다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 돈을 다 쓰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알파를 쫓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어떤 목적 없이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공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C-line이라고 어려운 시술 같은 걸 하는 그런 머미들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소모성 제품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쓰려고 했더니 쓸 게…… 하시겠지만 회의비도 한계가 있고 강사를 초청해도 공무원 기준으로 2시간 해야지 얼마다, 이게 도저히 쓸 수가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전공의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보니까 다른 곳에 100만 원 지원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협이랑 의학회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만드신 결로는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시고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범위와 지침을, 지금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재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현장의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이게 2025년도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 인건비 및 수당 지원하는 것하고, 이게 지금 목이 두 가지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25년 하반기부터입니다. 25년 하반기부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데 그 안에는 지도전문의의 유형을 3개에서 2개로 조정하고 또 지도전문의의 수당단가를 좀 조정하고 또 교육전담지도전문의의 투입 비중을 30%에서 15%로 조정하는 등 그런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적응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교부가 올해 늦었잖아요. 교부 자체가 늦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입니다.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서, 수련병원에 일체 주지 말고 평가를 해서 50% 이상 거기에 주라는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늦어지나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더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 항목 부분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항목을 좀 현실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제도개선 중에 한지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내용에서 일단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저쪽에서 수용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저기 할 때……

○한지아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수련병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개선할 수 있지 않나요? 개선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수련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전공의의 인건비, 전공의의 수련수당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라면……

○한지아 위원 아니, 그것은 철회합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건 아니라면……

○한지아 위원 그건 철회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러면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표현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렇지요, 그 부분이 좀 걸리네.

○한지아 위원 그러면 그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개의 제도개선사항, 시정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문구를 하나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부분에서 ‘수련병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이라는 글을 빼면 그냥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 대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선택적으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수용하신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하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3번부터 7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진료비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진료비 지원 인원 및 단가를 면밀히 추계하여 과다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입니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예산 확보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비 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장애인 구강 진료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현실화 등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98쪽입니다.

6번, 성과지표 개편방안 마련 검토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성과지표를 SCI 논문지수 등으로 개편하여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정보 영향력 지수와 논문 SCI 발표 건수 등을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7번이 있습니다. 7번 용역계약 체결관리 담당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 조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용역계약의 체결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 대하여 위반 경위 및 책임의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징계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징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3·4·5번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7번으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번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6번도 수용입니다. 4개 사항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각 제도개선 수용하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5개 중에 4개 사항이고.

지금 7번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타당성 연구를 했는데 1차 연장을 3개월을 한 바는 있습니다, 복지부가 요청해서 했고요. 이 변경은 과업의 변경이고 연구기간의 연장이었는데 당초 과업 중에 제외 내지는 조정해서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 적정 요건 분석이라든가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그리고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은 부지 선정이 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 수정을 해서 후보부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과업을 추가한 게 아니라, 추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감을 해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두 달 전, 2월 28일 승인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번 더 2차 조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의 자료 준비라든가 내용 검증 실사를 위한 연구기간 연장 요청이었고 이걸 연구기관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개월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과 과업 변경을 함에 있어서 계약 금액에 변경이 없었던 것은 가감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차관님, 이것 연장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공문 제목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마 지금 용어를 추가라고 썼던……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공문에 ‘과업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처음에 1억 9000만 원을 조달청에 예정 가격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몇 달이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계산하고 다 해서 1억 9000이잖아요. 그건 이미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끝나기 조금 전에 과업도 새로 주면서 석 달 더 해라, 그런데 전의 거 일부는 안 해도 좋다. 이미 용역을 한참 했는데 갑자기 용역 내용을 내가 조정해 줄 테니까 석 달 더 해라, 그런데 돈은 못 준다. 또 두 달 더 하고 돈은 못 준다. 그러면 그 일한 사람들 다섯 달 동안 최저인건비도 안 준 거잖아요. 인건비는 쥐야 될 거 아니야, 최저인건비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이 조정해서 했던 부분은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이라는 당초 과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부지 선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후보부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용역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던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처음에는 있었지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과업지시서를 해서 1억 9000 계산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처음에 내려보낼 때 예정 가격에 다 있던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몇 달 했고 거기서 일을 해서 인건비에다가 사람 써 가지고 곱하기 다 해서 주고 완료할 기간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용역이 필요하면 다시 그걸 새로 발주를 해야지요,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 됐든. 그런데 그것은 하던 데보고, 보건사회연구원보고 이것도 하나 더 해라, 이것도 하나 더 해라. 이게 속되게 얘기하면 갑질이에요, 산하연구기관한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진행했는데요. 저희들이 4월 28일 날……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복지부는 협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공문 내용이 과업 추가로 나갔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마 과업 추가로 했던 부분은 충분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지금 와서 추가가 아니고 조정했다는 말로 왜 이렇게 말을 바꾸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그 부분은 분명히 건립기본계획의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을 제외하고 그걸 후보부지 분석으로 한 건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과업 조정에 대한 승인 공문을 냈던 것은 2월 28일에 했습니다. 4월 28일 두 달 전인데요, 이 시기는 그 전에 협의 조정을 해서 공문을 두 달 전에 해서 과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걸 보건산업진흥원으로서도 건립……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그 기간이 다섯 달 늘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늘 거 아닙니까? 다섯 달 일한 것이 그 전에 어떻게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일한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 연구원들이 여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 과제도 동시에 진행을 했을 텐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 조정과 과업의 조정이 있었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용역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일도 했으니까 월급을 덜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른 일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을 배분해 가서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업으로 이 일들을 계속한 건 아니고 여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처음에 예정 가격 몇 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하는 걸 다 곱하기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1억 9000이. 다음 다섯 달 할 걸 예정하고 1억 9000 하신 거예요? 인건비에 계산 다 들어 있습니까? 당초 예정 가격에 그 다섯 달 인건비가 들어 있냐고요?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 과업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수보다는 과업 시간으로 할 텐데 담당 국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설명하세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국장 임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9000만 원에 있는 과업 내용 중에서 실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지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 설계를 한다는 것, 세부적인 건축 설계를 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에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들 자문이 있어서 12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처음에 발주할 때는 그걸 모르고 하셨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제일 처음에 이것 받을 때는 이 부분……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받을 때 예정 가격 뽑을 때는 그런 것 자문 안 받고 뽑으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받을 당시에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 연구를 추진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고 연구진도 이견 곤란하다는 말이 있어서 이 부분……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다섯 달 할 것에 대한 임금을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아니, 그래서 이 연구 실제 과업에 대해서 연구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과업 수행이 곤란해서 후보부지에 대한 분석 항목을 하자고 연구 과업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 얘기는 과업 조정인지 추가인지 모르지만 공문에는 추가라고 해 놓고 지금 자꾸 조정이라고 하시는데 분명하게 공문 두 번 다 과업추가라고 돼 있고요. 용어를 바꾸지 마세요. 과업추가라고 문서에 나갔잖아요. 공문서에 과업추가라고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추가가 아니고 사실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서에 추가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추가가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게 돼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안 맞고.

두 번째는 왜 돈을 더 안 주셨냐는 거예요. 1600만 원을 깎았더라고요, 나중에 정산하면서. 실제 1억 9000 다 안 드리고 좀 깎았던데 정산을 했겠지요. 하는데 다섯 달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해 줄 수도 있잖아요, 국가계약법상의 근거에 의해서. 왜 안 줬어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위원님, 그 1600만 원은 깎은 게 아니고 실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산한 것 아는데 그걸 묻는 게, 왜 5개월 치를 안 줬냐고 묻잖아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먼저 1600만 원은 거기서 사용이 곤란해서, 불용이어서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고요. 알겠는데 왜 5개월 치를 안 줬냐고 지금 묻잖아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5개월 치는 그만큼 5개월에 해당되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고 그 5개월에 해당되는 과업을 새롭게 저희가 같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연구비를 추가로 줄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안 드린 거고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섯 달 더 일을 시켰는데, 조정해서 과업이었는데…… 원래 포함시켜야 되는 걸 깜빡하고 못 시켜 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종료 두 달 앞에 뭘 더 해야 되는 게 맞더라. 너희들은 이걸 석 달 더 해라. 또 뭐가 빠졌네. 이것 또 추가로 할 테니 두 달 더 해라. 그게 결국 인덱스까지 검토를 시켰는데, 희망하는 네 곳에 대한. 다음번에 다시 4000만 원을 주고 또 용역을 하잖아요, 변수 인덱스 찾으라고.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8월 말까지? 그것도 다른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평가지표 연구 따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 얘기는, 지금 막 말을 맞추시는데 그때 했던 평가지표,

접근성이니 뭐니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지금 후보지역들이 계속 더 추가되고 이러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후보지역이 네 군데 말고 몇 군데가 추가됐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처음에 네 군데로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습시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난번 용역은 네 군데 대상으로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네 군데 대상으로 간 것은 후보지역 내지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고 그러면 이번에 몇 군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이번에 아직은 네 군데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뭐가 추가가 돼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문……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데 저번 용역 두 달 연장했던 게 평가지표 찾으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후보부지를 분석하라는 거고 평가지표까지 한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접근성이니 뭐니 주요 인덱스 찾으라고 용역 두 달 동안 한 것 아닙니까, 뒤에 연장한 것?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평가지표는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후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평가지표는 아닙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건 나중에 용역 8월 말에 나올 텐데 또 연장했어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아니요, 연장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직 안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8월 말이잖아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8월 말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오늘이 20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일을 더 줄지 안 줄지를 지금 말하는데 다 끝나고 열흘 남았는데 결정 안 하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연구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내가 지금…… 용역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지금 여섯 달 전부터 일해 왔는데, 열흘이면 완료인데 여기서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지금 하고 있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평가지표와 관련한 세부적인, 평가위원들이 알 수 있는 편람을 만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걸 하도록 연장 요청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개발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연장 여부가 필요한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 연구용역인 건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복지부 연구용역입니다.

○한지아 위원 저도 예전에 연구용역을 간접적으로 해 보면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어떤 특정 분석하는 보고서나 이렇게 정해져서 A·B·C·D라는 것을 분석하라고 해서 12개월 동안 그걸 원래 해야 되는데 좀 늦게 보고서를 주는 경우가 있지요. 대신 A·B·C·D를 분석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D가 필요가 없으면 D를 안 하고 A·B·C·E나 F를 해서 결과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인건비를 계산할 때 시간제나 날짜제로 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용역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의 접근입니까? 그걸 한번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맞습니다. 저희 내용을 토대로 연구용역 한 거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건축물이나 IT처럼 시간제나 이렇게 계산한 건 아닙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면 A·B·C를 하고서는 D를 안 하고 F를 했을 경우에 드리는 총 시간은 결국에는 똑같은 걸로 가정해서 제출하는 기한은 늦어지지만 아마 그것의 용역비는 똑같이 갖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갔던 많은 R&D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유형 인지를 여쭙보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그 형식으로 조정을 해서……

○한지아 위원 조정을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약이 1년인가요? 이게 24년 7월 2일부터 2025년 4월 28일까지 1차 계약을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서영석 위원 1억 9000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1억 9000에서 지금 한지아 위원이 얘기하는 C·D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용역 과업 중에서 빠진 게 뭐예요? C·D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빠지고 그리고 추가된 게 후보부지에 대한 게 네 군데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곳의 후보지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역을 분석할 것을……

○서영석 위원 그러면 1차 용역을 줄 때는 그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 과업이 없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연구용역 발주에서는 뭐가 빠졌다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차관님, 처음에 한 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

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설립을 할까 말까 혹은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 한다면 어떤 기본계획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줬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억 9000이었어요. 그게 예전 가격이라는 그 속에서 조달청에서 제한입찰을 했는데 조달청에 보냈던 예전 금액이 복지부에서 1억 9000이고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라고 자꾸…… 뒤에 공문을 두 번 보낼 때 과업추가라고 해 놓고 추가가 아니라고, 조정이라고, 협의했다고 서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1억 9000, 조달청에 보냈던 예전 금액 산출내역 있지요? 어떻게 그 금액이 산출됐는지를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 속에 원래 들어 있어야 되는 4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접근성 등등에 대한 평가 인덱스, 그 평가 인덱스가 왜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4개 후보지가 거리가 어떻게 거기 뭐 의료인프라가 어떻게 하는 것들을 다 해 가지고 4개 후보지에 대한 설립 타당성, 그러니까 4개 후보지 점수를 매겨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앞으로 얼마든지 후보지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미 얘기가 나돌고 있는 네 군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평가해 보라 이렇게 과제를 준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분석요청을 한 겁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내 말이. 왜 그걸 하세요? 설립 타당성이랑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그 후보지는 뒤에 이번에 하듯이 4000만 원 주고 인덱스 찾고 인덱스 찾은 다음에 공모받아서 그 인덱스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될 일을 왜 이 용역에서 현재 떠오르고 있는 네 군데에 대해서 당신들이 평가해서 결과를 내놓으라고 시켰냐 이거지. 나는 사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치의학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게 R&D로서 치의학 산업기술 발달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도 그냥 땅이 아니라 치의학 부지로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보려면 여기 관심 있는 지자체하고 이 내용들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 분석을 해야지만 저희가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 필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부분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계시잖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아니, 저희가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평가지표도 다시 한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말씀을 자꾸 어렵게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건 뭐예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평가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후보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지요?
-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입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그 전에 네 군데에 대해서 왜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상황은 모르는 건데……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그 부분은 평가지표를 갖고 있지는 않았고 후보지가 네 곳이 있으니 그 후보지들의 유형과 사안을 보고……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는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걸 왜 하셨냐고 묻잖아요. 네 군데를 왜 해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후보지가 여럿이 되더라도, 그게 4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더라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마련되어 있어야지 저희들이……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표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을 따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평가지표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글썄, 그걸 하면 될 일인데 그러고 나중에 공모받아서 열 군데 들어오면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평가를 위한 지표는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겁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그 전의 용역에서 왜 그걸 추가로 과업을 주냐고, 네 군데에 대한?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 추가라는 건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네 군데 희망지에 대한 평가를 용역에서 왜 요청을 하셨냐고, 무리하게 연장까지 해 가면서.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그 부분이……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내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제가 말씀 다시 거듭 드리지만 당초 과업에는 건립기본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이라는 부지를 전제로 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닌 여러 개, 4개가 되고 또 더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0개도 될 수 있겠지요?
-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 부분들의 건립기본계획이나 건축설계지침을 가질 수가 없으니 일단 이 과업에 대해서 후보부지를 분석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인 요건들과 또 다른 특수한 요건들을 봐서 저희들이 평가지표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1차

연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사전타당성연구를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을 억지로 맞추는 건데 평가지표 용역을 뒤에 하면서 앞에서 네 군데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러니까 첫 번째는 4개 부지에 대한 후보를 분석하는 것은 평가이기보다는 후보지들이 갖고 있는, 후보지들이 또 제안하는 부지나 사업계획들이 어떤 공통점과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것들을 가져야지 다음 단계 절차로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잠깐만, 그걸 안 하면 이번 인텍스 용역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인텍스라고 하시면 평가지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지금 하고 있는 평가지표 용역은 그것 안 했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은 후보지 분석이 있음으로써 일반화시키는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데 더 유리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래서 이번 2차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에 부랴부랴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더 하라고 지시를 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돈을 더 드리지는 않았습시다. 과업을 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돈 안 준 게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자꾸 돈 안 줬다고…… 공문에 분명히 과업추가라고 두 번 다 명시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공문에서 추가의 의미는 과업을 추가도 하고 감하는, 없앤 조정안,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문서에 조정이라고 쓰셨어야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죄송의 문제가 아니고 문서에 박힌 걸 자꾸 말을 바꾸시면 안 돼요. 추가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사실 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그건 추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추가라고 했지만 그 추가의 배경에는 전제가 있어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차관님, 공문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공문의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건립계획 수립과 건축설계지침 작성을 후보지 분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전 가격, 조달청에 보낸 1억 9000 산정내역 있지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1억 9000의 내역 속에 이게 들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는 내용인데 추가를 해서 가지고 지금 조정이라는 말로 하시는 건지…… 없는 과제 시키셨으면, 1억 9000 산정내역 속에 없으면 돈을 더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보냈던 예전 금액, 1억 9000 보내셨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서류를 달라고.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걸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것 안 보고 지금 이렇게 조정입니다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한지아 위원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해 보고 주변에서도 워낙 R&D 많이 하니까 아마 일일로 산정이 되기보다는 과제가 통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과업 조정을 할 때 보통 1년 이내에, 그러니까 그 용역과제가 1년이다 그러면 1년 이내 과업 조정을 보통 하잖아요, 과업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지적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게 만료일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돼서 조정이 아니라 추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으셨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B·C·D 중에서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걸 넣었는지에 대한 게 조금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초 과업에는 어쨌든 치의학 설립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준 거잖아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1억 9000에 줬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 용역대로라면 어떤 부지를 선정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데, 원래는 그게 맞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부지가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립기본계획 수립하고 건축설계지침상 작성은 필요가 없어진 거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4개 후보지를 놓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이것을 변경하다 보니까 용어가 추가됐거나…… 약간 혼선이 생긴 것은 위원장님 지적처럼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발주자 입장에서는 뺀 것까지 돈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변경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 4개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또 추가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4000만 원짜리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애당초에 4개 후보지는 오래 전부터 후보지였어요. 다 알고 있던 건데 용역을 발주할 때 그것도 당연히 고려해서 집어넣어서 갈 것을 처음에는 안 해 놓고 있다가 다 끝날 때쯤 돼서 다시 3개월 더 연장해서 추가로 이걸 해 보라 그러고 다시 또 두 달 연장해서 네 군데 평가를 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다시 변수, 평가지표를 만들라고 또 용역을 발주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이 과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느냐?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조달청에 맨 처음 경쟁입찰 제안 보낼 때 보냈던 1억

9000 예정 금액 산정내역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돈을 계산해서 1억 9000을 조달청으로 통보한 것인지하고 소위 말해서 4개에 관해 접근성이나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1차 간이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평가가 다음번에 지금 말한 대로 설립 타당성이나 하는 부분과……

나도 읽어 봤어요. 용역 내용을 봤더니 별로 연관도 없어. 그냥 네 군데 다 알고 싶었던 거야. 대충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뿐이지 무슨 설립 타당성이나,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냥 누가 시켜서 했는지 한번 해 본 거예요, 네 군데. 그리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가지표 한번 개발해 보자 이렇게 돼서 용역이 또 나간 걸로 저는 이해가 돼서…… 그렇게 시킨 건 좋은데, 궁금하면 시켜야지요. 그런데 내 얘기는 돈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이것은 원래 있던 과업 안에 있는 거고 한두 개 빼 줬으니까 추가로 해도 문제없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산정내역을 봐야 될 텐데 거기 단가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보는데 정말로 그렇게 조정하면 더 이상 지급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단가 계산이 산정내역에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1억 9000 산정내역을 보고 판단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조정입니다 하는 말씀만 듣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기에는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의결하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이든 저녁이든 간에 산정내역을 일단 주세요. 주시고 정확하게 이것을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류로, 문서로 다시 답을 주세요. 그냥 이걸 해야 좀 더…… 이렇게 적당히 답변하지 마시고 문서로 주세요. 그래서 그 문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볼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 건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하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이게 연구기간 내에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한지아 위원 제가 그것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 그랬는데요, 기간 내에서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연장도 자주 한다는 말씀을 좀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8일 날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연장했는데요. 사실 그 협의는 국장님이 거듭 설명을 드렸지만 그 전 12월 연말부터도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를 했고 그 결정은 2월 28일, 두 달 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발주하다 보면 많이 있는 사례인데 추가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법령의 위반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만약에 당초 1억 9000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됐고 다섯 달 일을 시켰는데 애당초에 그 1억 9000 산정이 없던 일이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거예요. 조정했을 때는 조정해서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최저 인건비 정도는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한지아 위원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산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제에 따른, 시간이 투여되고 안 투여되고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최저 인건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니까 원래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이걸 하라고 해 가지고 얼마 해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 일할 거라고 해 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곱하기해서 나오는 내역이 있거든요, 실제로 줄 때 예정 금액에서. 그 내용을 보는 거지요. 보는데 실제로 여기 있던 내역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한다고 해 가지고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한 걸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일을 다섯 달 했는데 정말 이 속에 있는 정도에서 빼고 일을 하게 된 건지 그동안에 다 했는데 과업을 슬그머니 바꿔 가지고 추가로 더 하게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요. 말씀은 이것 뻔했으니까 그게 그겁니다 하지만 그거야 봐야 되는 거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거둬 말씀드리지만 12월에 논의를 시작해서 2월에 조정을 해서 두 달을 앞둔 시점에서 3개월 연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5개월이예요, 5개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그리고 2개월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것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 협조가 쉽지 않아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복지부에 2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문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요청도 없던데.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아니, 그 문서 자체를……

위원님, 저희로 말하면 보건산업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부 공문이 안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보신 공문, 실제 연구비를 주는 저희 운영지원과에서 진흥원에 준 문서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 추가’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진흥원하고 우리 부처에서 오고 간 문서에는 조정과 관련된 문서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방문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고요.

하여간 아까 말한 대로 조달청에 보냈던 1억 9000만 원에 대한 산정,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정 가격에 대한 산정내역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 한번 보여 주시고.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까 말한 대로 오고 간 공문을 실제 제가 보고……

전화했을 때 말로…… 산하기관 아닙니까? 거기가 뭐 힘이 있어요, 여기서 하라면 하는 거지? 뭘 서로 협의를 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간 자료 줘 보세요, 한번 보게.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일단 이걸 보류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건산업진흥원이 힘이 없진 않아요. 온갖 산업과 연구개발 다 가져가

요. 뭐가 없어.

(웃음소리)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문위원님 진행 계속하세요.

○전문위원 박동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필수의료정책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1번 보건소 건립 지원 및 사업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5국 3특 지역의료체계 구축 기초에 발맞춰 국립 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고령인구 비율, 보건의료 접근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적정성 검토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 신청 단계에서 부지 확보, 도시계획·인허가, 지방비 확보, 구조안전성 및 총사업비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기점검과 사업조정을 통해 연례적인 이월·불용 및 사업 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을 개선하고 지자체 수요와 중장기 설치목표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라는 내용과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2쪽입니다.

4번 지역필수의사 확보 및 실집행 부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 시에는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며 실제 집행수요에 따라 분할교부하고 예산 교부 이후에도 사업별·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지속 점검하며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4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건에 대한 의견은 1·2·3번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하나, 지금 99쪽 1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수용으로 돼 있지만 수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02쪽 4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의와 제도개선이 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해서 일부 수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자체별로 참여 의사의 모집 계약이 연말까지 계속돼서 최종 채용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부분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소요 예측에 한계가 있어서 권역별 운영비를 일괄 교부하였던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집행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 내용으로서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주의 의견으로 시정요구를 하신 것을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번에 대해서 일부 수용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게 적혀 있는데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1번은 제도개선 수용하시고 2번, 3번도 수용하시고 4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수용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의견 주십시오. 4번 주의 말고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신데요.

○서영석 위원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닐 테니까 현실적으로 의사들의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일 걸로 보여져서 좀 탄력성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걸 제도개선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5번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5번부터 8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처리 중단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3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는 법적 근거 없는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필요한 예외가 있다면 법률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의무복무제도 전반의 관리 원칙을 정비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법률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법령을 준수하여 공중보건장학금 납부기한을 적용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적시적인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산 및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실제 시간대별 소아환자 이용수와 의료기관의 인력 부담을 분석하는 한편 평일과 주말·공휴일의 진료시간을 세분화해 시간대별 환자 수요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간대별 차등수가와 운영시간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소아환자 상담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소방청과의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아전문상담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기관별 역할분담 및 소아 관련 상담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개 사항에 대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그런데 103쪽 5번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 서영석 위원님 안은 지금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신 부분도 좀 있고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77년에 제정돼서 저희들이 한 20년간 운영하다가 97년부터 18년까지는 중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년에 시범사업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 연혁을 갖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또 현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애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개선으로 맞춰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번, 소아환자 상담서비스 전달체계 관련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견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청과 협의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소방청과는 계속 저희들이, 119구조·구급법은 소방청의 소관 사항인데 개정 과정이나 그 이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기능의 조정이 협의가 좀 더 원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게 시범사업이고 저희들이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응급을 두고서 경증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주로 맡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은 일부수용하여 주의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이게 어찌 됐든 법률을 위반한 건데 그것도 제도개선이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어찌 됐든 이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의무복무 기간이, 앞으로 지역의사제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비춰 보면 의무복무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장학금 의무복무를 하면서 또 워낙 숫자가 적게 양산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의무복무를 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들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종용하고 이런 것들에서 즉시 중단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면제를 해 주는 사례가 어떤 경우예요? 어떤 사람은 이행하고 어떤 사람은 면제받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입니다.

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양한 사유가 있었는데요. 법에 있는 사유 말고 공중보건장학생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를 제시한 경우 또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는지 또 본인이 아픈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면제를 해 줬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면제를 하면 환수를 하나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예, 환수는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율이 얼마나 돼요, 면제 되는 경우가?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지금 면제되는 경우가 101명 중 13명이……

○**서영석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경우는 앞으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사제를 염두에 두면 이 룰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정도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 위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면제된 건수가 19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여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로 면제사유를 둘 수가 있고 위원회에서 그 기타 사유에서 수용이 되면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19명 중에서 1·2·3·4에 해당하는 건 1명이었고 나머지 18명은 면제를 받은 사유가 다 기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한지아 위원** 서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앞으로 지역의사제나 국립의 전원이 생기는데 거기도 5번 기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의사제……

○**한지아 위원** 똑같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외사항들을 더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화하든지 아니면 진짜 본인이 아파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든지…… 좀 불명확한 기준들이고 그 18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도개선 할 게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하여간 계속 말씀하시지요.

○**한지아 위원**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주의로 하는 것도 제가 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이 조치사항은 어떤 고의나 위법사항이나 과실이 없이 제도상의 어떤 불비한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제도개선이고 위법한 부분이 조금 있고 과실이 있는데 경미할 경우에 가는 게 주의입니다. 이게 커지면 시정

되고 징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서영석 간사님이 위법한 부분이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서 주의 정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려우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5번은 주의로 하고 6번도 주의 수용하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6번 수용하신 거고 7번은 제도개선이고 8번의 시정을 일부 수용에서 주의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맞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한지아 위원 이거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차관님?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이 사업은 구급대들이 현장에서 이송함에 있어서 소아전문응급센터 의료진이 민간위탁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등의 전문성 있는 상담을 통해서 이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인데,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서 부처 간 협의, 기능 조정을 해 가지고, 주로 소방청입니다. 소방청과 의논을 해서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협의 부족이라든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은 잘 갖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의 부족이 있었던 거지요? 왜냐하면 소아과 의사가 24시간 상담하는 사업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25년 6월에 개정됐는데 소아·청소년 환자 상담은 119구급상황센터 업무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도 의료인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거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시범사업이 끝나면 중증 쪽은 응급실,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하는 게 좋겠고 경증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응급상담실 우리 서비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경증을……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경증은 저희 복지부에서……

○한지아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잘 이해는 안 되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쭙보면 기재부 재정

사업평가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70억 불용도 있다는데, 국회 지적사항 중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시간 연장 미완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던데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에서 지적사항 중에.

이 자료가 환류계획 보고서에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복지부 환류계획이라고 있잖아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환류계획이라고 하는데. 47페이지인가 밑에 보니까 ‘환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국회 지적사항 중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시간 연장 미완료 이렇게 해서 괄호로 협의 중하고 표시를 했던데 이걸 뭐가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5쪽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앞의 거……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평일 같은 경우에는 18시에서 24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09시에서 22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는 24시까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완료된, 그러니까 밤 9시까지만 하고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런데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기 지적사항이라고 제기돼 있잖아요.

○**한지아 위원** 이번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요, 저건 예전에 지적했으니까, 과거에 지적했으니까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에서 반영을 했겠지요. 국회 지적사항을 완료를 안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만 지적한 게 아니고 이전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한지아 위원** 그런데 이번의 지적사항은 시간외 24시간은 너무 과하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유연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지적은 거꾸로 유연하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밤 12시까지 손님도 없는데 열어 가지고 가격도 안 된다고 줄여서 유연하게 하라는 건데 과거의 지적은 24시까지 열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예, 모범 운영시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마쳤다고……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렇지요. 그런데 일찍 닫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시정하라고 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

제가 들어 보니까 올해는 한지아 위원님이 그렇게까지 확일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한지아 위원** 제가 하지는 않고 다른 위원님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위원님이 하셨나요? 유연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갈리시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105쪽의 7번 사항이었는데요. 달빛어린이병원 확산과 관련해서 김운 위원님의 제도개선 요구가 사실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했던 거고요.

시간대별로 9시까지 운영하는 것, 24시·0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시간대별 수요도 차이가 있고 인력의 대기 부담도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개선해 달라는 요청

이었고 그걸 저희가 수용했던 것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알겠습니다. 그건 수용하신 걸로 이해하고 포함되는 걸로 하고요.

○한지아 위원 8번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이 소아전문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저녁 시간에 갑자기 우리 애가 아파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지요, 이 응급상담센터예요. ‘이렇게 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응급실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상황실에 대한 업무는 응급실을 실제로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매칭하는 걸로, 약간 영역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 다른데, 물론 119를 타고 가야 되면 그때는 119상황센터에서 작동해서 병원 매칭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전에 일반적인 소아의 상담 관련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혹시 아니면 이종규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이종규 국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공의료정책관 이종규 공공의료정책관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기 조직 개편 전에 원래 좀 맡고 있어서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119법에 따라서는 소아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아에 대한, 119에 환자 보호자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프면 어쨌든 일단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열이 나지만 해열제를 먹이거나 좀 상황을 지켜보면 병원을 굳이 안 가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그것 자체를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상황들이 아니어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119가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의정 사태 때 25년 7월에 이게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던 이유가 그때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접근이 쉽게 잘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뭘 했냐면 일단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 상태가 좀 열이 나고 걱정이 되면 우선 전화를 걸어서 의료인들과 전화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초기 평가를 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급히 시범사업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119법에도 있긴 한데 그걸 왜 협의 없이 시작했냐라고 했는데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아이들의 응급한 상황과 그다음에 응급실에 접근하기 힘든 상황들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걸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좀 진행하다 보니까, 소방은 시도별로 소방본부가 있는데 소방본부의 구급상황센터에 의사 선생님들이 소아과 선생님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담이 미흡한 상황도 좀 있었고, 그게 조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2개를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 자체는 좀 시급한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이 좀 안정화되면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

는데 이게 119랑 협의가, 법이 있는데 왜 법적 근거 없는 이쪽에서 예산을 또 따서 중복하고 있느냐라는 지적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은 좀 진행하면 어떻게 보면 협의를 좀 해서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배경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결이 달라서 이걸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제도를 좀 정교하게 이제는 연계를 시켜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이게, 그 단계가 뭐지요? 제도개선 그다음에 주의 그다음에 시정 그다음에 징계인가요?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이 시범사업은 사실 본사업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19 이게 있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그런데 왜 복지부는 주의로 했나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의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시정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단계만 낮추는 걸로 했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하나를 내리겠다고 그런 건데……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진행하면서 이것을 보류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희 위원님 의견을 못 듣잖아요. 시정을 요구하신 분의 의견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서, 방금처럼 이걸 제도개선 사항이지 무슨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시정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주의를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주의를 수용하시겠다고 그러면 주의로 해서 마무리 지어 버리고 만약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신다고 한지아 위원이 지금 하면 일단 보류해서 내일 이만희 위원님 의사 확인하고 제도개선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수용하시겠어요?

(웃음소리)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수용하는 걸로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받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이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안 할 건가요?

○한지아 위원 이 사업 해야지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해야 됩니다, 소아전문센터.

○이수진 위원 아니, 할 건데 뭘 주의를 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일단 제가 볼 때는 제도개선·주의나 부처에서 받아들이기는 비슷합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요까지는 마무리하고요.

혹시 내일 제가 한번 여쭙볼게요. 이만희 위원장님한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해서 본

인이 자기도 그러면 제도개선 동의하겠다 하시면 내일이라도 의결할 때 내려서 의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여기는 주의로 수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문위원님, 계속하시지요.

14번.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관 소관은 총 8건입니다.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위법한 민간 재대여 시정 및 불법수익 환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5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국립중앙의료원의 무상대부 국유재산을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에 재대여하고 그 수익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상대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대여 계약의 해소 방안과 무상대부 국유재산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민간 재대여와 관련하여 재대여 계약의 즉시 종료,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조치 실시, 불법수익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 불법 재대여 계약을 즉시 종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 민간 재대여 계약의 즉시 종료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민간 재대여와 관련하여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5개 모두 주의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닥터헬기 권역 확대·유지를 위한 실질적 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닥터헬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신규 배치와 기존 권역 계약갱신 과정에서 사업자 미확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 지원사업의 현장 참여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 지원사업의 미참여 원인을 전수조사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율과 인력기준·운영비 지원방식 등 사업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이며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및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문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 가능

한 실질적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부족 지역에 신규 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개의 시정요구유형 모두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107쪽 1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수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수용이라고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다 수용하신 거네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추가적으로……

○서영석 위원 제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서영석 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제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근사한 카페도 하나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이런 공간으로 정말로 근사하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된다면. 그러면 이 경우는 어쨌든 임대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못 하게 막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헛갈려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한지아 위원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법 전대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 개정하는 안을 제안하셔서 상임위 의결이 되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환자들에게 그런 유익한, 유용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또 중앙의료원으로서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하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위원장님, 지금 이게 주의사항으로 시정요구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앞의 1번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7쪽의 1번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일부 수용으로 했는데 수용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다 수용은 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5개까지 되니까 이수진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구로 정리해서 의결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 문구로 정리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

백종현 간사님, 어떠십니까? 읽어 보시지요, 내용.

○백종현 위원 차관님께서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안으로 해 달라

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백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게 작년에 생겼던 문제고 올해 개선을 좀 하지 않으셨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도 더 강하게 질타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주의 정도로 수용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에 생겼던 문제에 대한 지적이고 올해 개선한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지아 위원 사실은 그 법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통과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예,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여튼 그 법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약간 상충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어쨌든 이건 결산이고, 결산 있었던 일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예산이나 법이 개정되고 바뀌 가는 건 앞으로 협의할 문제니까.

일단 그러면 부처에서 희망하시는 대로 이수진 위원안을 문구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계속 진행하시지요.

○전문위원 신은호 5번부터 8번까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실적 부진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수요 및 미충족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인력군을 대상으로 파견을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취약지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실적 부진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원격협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3페이지, 7번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 및 운영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지원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외상학 분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8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액 감축 관련 재발 방지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

경 준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미상환 경위와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내역 및 국회 보고 여부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는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운용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며 2개의 시정요구 모두 주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개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5번에 대해서 주의인데 제도개선 의견을 드리고, 6번·7번·8번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5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서 지금 파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그 인력 파견기관의 운영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만큼 인력을 파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앞으로 파견 대상 직군을 간호사 외에 응급구조사 등까지도 확대하고 파견인력 모집을 위한 경제적 유인 강화 등을 검토하고 또 단기 파견 도입이라든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촉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당초에 주의 수용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좀 내려 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텐데, 취약지·벽오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의사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이게 꼭 응급의료 이런 데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이런 데도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인가 예산 때도 보니까 간호사들을 갑자기 대거 뽑아 갖고 훈련수당을—추경 때였나 보다—넣어 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하다 보니까 벽오지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벽오지 근무수당은 월 4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간호사는 벽오지 근무수당이 0원이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게 정말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어찌할 것인지 계속 개선을 할 의지가 없으니까 주의를 받고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런 취약지·벽오지에 대해서 다른 보건의료 인력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벽오지 근무수당이라든지 기타 재정적 기반을 만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님, 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제도개선과 여러 예산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들이 어떤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지금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는 예산 사항이지만 인건비 단가 인상 등을 통한 노력도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주의보다는 하여간 제도개선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제가 보면 이 사항이 위법하거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수진 위원님이 원하시는 거는 맞는데 확실한 개선 의지가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2차관님께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정책관 소관 총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 추진절차 보완 및 연차별 예산 편성 등의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절차 보완 및 연차별 예산 편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준비도와 함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실집행률을 지속 점검하여 반복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두 건 모두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각 시설별 기능보강 수요 및 지원 규모의 정밀한 추계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 편성 시 각 시설별 기능보강 수요 및 지원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및 지역사회 복귀 실태 점검 및 사업 간 연계·조정체계 강화 필요합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및 지역사회 복귀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달리 의견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4번부터 8번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4, 부실한 사업설계 및 과다예산 편성 시점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기준 마련 및 재배정 절차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부실한 사업 설계 및 과다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역별 신청 추이와 예산 소진 현황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조기 소진 지역에 대한 재배정 절차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심리상담 바우처에 대한 실제 신청 수요, 지역별 상담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상담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1페이지 7번, 심리부검 동의율 제고,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개선 및 상담전화 2센터 위탁 근거 마련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심리부검 동의율을 높이고 청년 소외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예약과 상담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담 방식과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에 대한 법적 위탁 근거와 적정 예산 비목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는 부대의견인데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재난인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차관을 자살예방 전담 차관으로 하고 산하에 자살예방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적·체계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4번부터 8번까지 5개 사항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하나 말씀드릴 게 118쪽 4번에 대해서, 5번 요구 사항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이수진

위원님께서 부실한 사업 설계와 과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의를 주셨고 다른 사항들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있습니다. 5번도 저희들이 실제 수요나 집행 가능성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에 대해서 실집행 부진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물론 했지만 조기 소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초기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제가 왜 주의 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제가 지난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하면서 이것 다 사용 못할 것 같으니 무슨 하명 예산처럼 만들지 말고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해라, 그런데 당시 2차관께서 ‘다 쓰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버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제가 누구 하명 예산이라고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투자 지원 사업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한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막 전시성 행정으로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복지부가 그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그런데 결국은 이것 감액했는데도 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가 예산 매칭 준비가 안 됐든 사업 계획이 안 됐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예측이 가능하세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노력하시고 또 지자체마다 찾아 다니시든지 캠페인을 하시든지.

사실 노력한 만큼 그 예산과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주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제도개선으로 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백종현 간사님.

○백종현 위원 차관님, 바우처 사업이 신청하고 소진이 실시간으로 잡히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백종현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보셨다 안 보셨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실시간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저희들이 바우처 사용내역에 대해서 월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은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도 보통 8회 바우처를 드리는데 평균 6.8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추경 감액은 했지만 추경 감액 이후에 실집행률은 97.3%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모니터링하는 것하고 관계돼서 이용에 대해서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170개 지자체에서 접수가 중단됐는데 연도 중에 소진 지역으로 재배정

한 그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년 2회 이상 변경 내시를 합니다. 소진된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 조정을 해서 남는 곳에서 다 소진한 지역에 주는데 소진한 지역에서는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러면 접수 중단된 지자체가 올해 시점에 몇 곳이나 되는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아직 그 부분은……

말씀하세요.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입니다.

지금 9월 정도에 소진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소진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접수 중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국민이 몇 명인지 추계해서 또 제출해 주시고 그 규모를 2027년 예산 편성과 지역별 배분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또 의견 있으시면……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아까 1차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데 좀 부끄러운 민낯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층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핸드폰 같은 디지털 유산, 사망자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살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디지털 유산을 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장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리 부검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디지털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나 반영이 되는지는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우리가 범죄…… 이거와는 다르겠지만 범죄 수사를 할 때도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과 같이 자살자들에게도 많은 흔적들이, 징후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친구를 잃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규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어떤 좋은 제도적 설계가 가능한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따로 추가적으로 의견이 없으시면……

8번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그냥 문구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까 말씀하시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하는데……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주어가.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주어가.

저희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되게 자살예방에 대한 노력들을 각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 생명지킴대책본부가 사실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거고 범부처가 전 지자체와 함께 자살예방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과제를 넘어서 지금 정부 전체가 범부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를 ‘보건복지부’보다는 ‘정부는’ 해서 해 주시고.

복지부는 전담 차관을 물론 두고 또 관계 부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범부처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복지부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있고 또 자살예방의 전담 부처로서 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전문위원님, 이게 주어를 정부로 해도 상관없어요, 부대의견 다는 데? 이게 보건복지부 결산 심사에서 부대의견이 달리는 건데 전체 정부를 주어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도 문제가 없는 거냐 해서.

사실 국무조정실 쪽에다가 이것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국무조정실 쪽 하는 데서 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결산하면서 국무조정실에게 이런 걸 해라라고 부대의견을 다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 신은호 사례를 한번 찾아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게 국무조정실을 담당하는 상임위면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해야 될 의무 사항을 우리 결산에 담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달아 주는 게 앞뒤는 조금 안 맞지 않나요, 형식상으로?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이게 국조실에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국조실에는 생명지킴대책본부가 범부처 대책본부로 해서……

○한지아 위원 그게 자살예방을 주관하는 국조실 범부처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범부처 대책기구이고 거기서……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 의견은 뭐냐 하면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의결하는 바는 보건복지부도 어쨌든 2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애를 써라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인데 그걸 정부로 바꿔 버리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2차관을 무슨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라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라는 거잖아요, 전담 차관으로. 그러면 지금 국무조정실 조직하고 충돌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하더라도 저희가 자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처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지금 현재 자살예방정책과가 있고 또 위원님의 부대의견은 자살예방관까지도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이라고 주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일단 부대의견 문구에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반납금 체납에 관한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반납금 체납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강제이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발생하는 미환수액도 납부기한 경과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법정기한 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위원님들 따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상병 분포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복지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은 두 건입니다.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외탕전실 품질관리·평가인증 및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한의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두 번째,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지원과제 성과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경쟁성과 우수성을 높이고 연구비 투입 대비 논문·특허·임상근거 창출 및 실제 의료현장 활용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가 저조한 내역사업은 과제 구성과 지원

방식을 재점검하고 후속 지원 여부를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정부 측 의견은 1번에 대해서 일부 수용, 2번 수용입니다.

1번 일부 수용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인데요. 인증 의무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 의무화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증 의무화 부분은 참여율 제고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지아 위원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원외탕전실의 품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지요? 작년 국감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외탕전실이, 인증한다는 것은 한의약 현대화 사업의 시범이 시작된 거라면 이제는 품질관리로 간 것 같아요. 품질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이 2021년도 10개에서 2025년도 25개로 증가했는데요. 결국 인증률을 보면 19.7%, 2024년도에는 5.1%로 더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고 품질관리와 평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참여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인증을……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참여율 제고로……

○한지아 위원 참여율 제고로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의약 원외탕전실을 인증으로 할 인센티브가 없지 않나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방석배 한의약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없고 디스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다만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은 현재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소로 늘어 있고요. 다만 이것 말고 품질관리하는, 안전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2%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볼 때 인증률이나 참여율이 내려가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모수가 늘어났을 뿐인 것인데 그래도 인증률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모수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방석배 예.

○한지아 위원 그러면 법적인 제도를 저희가 하면 의무화에 대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화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그쪽에서, 국민 위생·안전을 위해서는 의무화하는 게 맞는데 의무화를 강제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렇지요? 의무화법을 꼭 국회에서 국회의원 발의할 건 아니고 정부에서도 발의할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발의해서 이것을 추진할 생각은 아직 없고 국회에서 이걸 만들어 주시면 그걸 근거로 가지고 하겠으되 현재로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지아 위원 의무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품질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의무사항으로 가야 돼요. 왜 지금까지 안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하셨지요? 정부에서 이걸 왜 추진을 안 하셨지요? 작년 국감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요.

○보건복지부한의원정책관 방석배 현재 연구가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작년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증 강화 부분과 그러니까 약침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 강화 그다음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증 제도에 대해서 부담 경감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개선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이어서 의무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한의약 쪽의 특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현재로서 그냥 의무화를 하자 이렇게 가기에는 현장 수용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단계를 좀 밟아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한지아 위원 다품종……

○보건복지부한의원정책관 방석배 소량.

○한지아 위원 소량. 그런데 소량 생산 안 하잖아요, 원외탕전실에서요. 그 뜻인가요? 원외탕전실이 작년에 보면 A라는 한의사는, 한방병원은 서울에 있는데 원외탕전실은 경남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혀 품질관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고 다량으로 약들이 생산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증에 대한 참여율도 떨어지고 있고 품질관리에 대한 것도 5.2%밖에 안 되는데 의무화를 법이 만들어지면 하는 데 좀 부담스럽다는 의미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증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마련 말고 검토로.

○한지아 위원 왜 마련을 못 하는 거지요? 법을 그러면 발의하시면 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사실은 현장의 수용성 같은 것들을 많이 염려하는데요.

○한지아 위원 수용성이 더 중요한가요, 국민의 안전정보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아니요, 안전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영석 위원 이게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원외탕전실 인증을 당장 의무화하면 특정 업체에 집중돼 버리는 그런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야 될 방향은 맞는데……

○한지아 위원 ‘단계적으로 마련할 것’ 이렇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맞다 그러면 아까 표현하신 대로 참여를 제고하고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 해 놓고 ‘검토·강구할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부담은 그렇게 없으시잖아요, 검토해 보라는 뜻이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제도개선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정도 문구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서영석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 두 가지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문구 그렇게 해서 수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첨단의료지원관실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지원관실은 총 5건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자 모집 제고 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한 인력·홍보 지원과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모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변경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잦은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128쪽입니다.

2번, 연계 의료기관 확대 및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연계 의료기관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지방의료원 등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비대면 협진 실적, 치료 성과 및 진료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 필요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개발 단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과제의 발굴·선정 및 후속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제 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과제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4번입니다.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신청·제공이 저조한 원인과 미승인 사유를 분석하여 신청 절차와 연구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 수요가 높은 데이터 확보와 국공립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플랫폼 데이터 다양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5번입니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플랫폼 고도화 등 플랫폼 활용도 제고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능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실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수진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2번이요, 128페이지 2번에 이천의료원 가 봤더니 원격중환자실(e-ICU) 네트워크 구축이 잘돼 있더라고요. 분당서울대병원이란 연계해서 중환자실 환자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협조가 잘돼서 그래서 가서 보고 제가 느낀 게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환자 통계를 보니까 뇌혈관질환자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사망률이 라든지 이런 게 그쪽 인근에 이천이라든지 양평, 그쪽 아래쪽이겠지요. 그쪽에서 바로바로 이송을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케어가 가능하니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같이 봐 주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는 게 지금 있는 데들도 꽤나 성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응급실 중환자실을 병원들이 운영하기를 특하나 좀 작은 병원들이 운영하기 부담스러워해요.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내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지요. 응급실은 있는데 중환자실이 없거나 이런 데들도 있거든요. 민간 중소병원들 보면 그 지역에 꼭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사업에 실제로 대학병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공익형 민간 중소병원들 이런 데들도 연계해서 중환자실 이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 지역에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의료기관 대상의 사업설명회라든가 성과 공유하는 노력 또 병원의 수요를 발굴해서 참여 확대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방 신규 권역을 확충하는 데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지역협력병원들은 공공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25년에 신규 선정한 곳은 두 군데고 거기다 공공의료원들이 있는데 또 민간병원들과도 협력하는 거점병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형은 되게 유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실을 원격중환자실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서영석 간사님.

○서영석 위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신청이나 제공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의 질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접근성이 어려워서인지 이게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 해 본 것으로 보면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장현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장현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참여자분들의 데이터를 모을 때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4번이야?

○서영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지아 위원 그건 1번인데.

○서영석 위원 데이터를 만드는데 참여자하고 뭘 상관이 있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장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공공의료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애로가 있는 부분은 데이터 제공 절차를 좀 더 신청을 받아서 결합해서 가명 처리를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제공 절차를 효율화하는 부분과 또 실제 수요가 있는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라든지 임상 데이터를 추가 연계, 결합하는 부분을 위해서 향후에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플랫폼 만드는 것에 대한 심의를 오랫동안 해 온 거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장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뭔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잖아요, 데이터의 질이 안 좋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어렵거나 두 가지가 일단은 장벽일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데이터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성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돼서 뭔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 만들어지나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저희들이 건강검진 정보라든가 암 등록 정보 같은 70종의 데이터셋을 마련해서 연구자가 요청하는 데이터셋으로 결합해서 제공하는 사업을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 188건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접근성은 사실 주로 오프라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가서 활용하고 그 결과물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질의 문제보다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또 데이터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게 활용도를 약간 좀 낮추는, 장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데이터 제공 절차를 좀 효율화시켜서 사전 구축하고 또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들도 마련해서 빅데이터플랫폼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양날의 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걸 철저히 하되 어쨌든 모아진 데이터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십니까?

○이수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따로 없으시면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서 다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산업정책국인가요, 진행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박동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R&D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장기 미납된 연구개발비 환수금·제재부가금에 대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최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종평가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평가기간 점검·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2번, R&D 과제의 중단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과제 선정·협약 단계에서 수행기관의 재무건전성, 연구책임자·핵심인력의 지속가능성 및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수행중에도 위험 요인과 단계평가를 면밀히 관리하며 중단 과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사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관리에 환류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3번입니다. 134쪽입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과제 추진 주의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예산 편성 취지 및 불필요한 사업비 확대를 억제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신규 과제를 추진한 것에 대해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였습니다.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예정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급성 등 객관적 입증 필요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교육·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추진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세 번째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도 있고 제도개선도 있거

든요. 둘 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3번.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지금 위원장님께서 거둬 확인해 주시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같이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 편성 당시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명시된 사업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요. 당초 사업비로 편성하거나 또 사무국 형태의 집행이 곤란해서 기획 중에 연구지원 진로 유인에 해당하는 멘토링 사업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을 가졌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제도개선으로 맞춰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한지아 위원님 하시지요.

○**한지아 위원** 일단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R&D에 대한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것 불필요하게 쓴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제도개선으로 갈 수도 있고 주의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만희 위원장님께서 주의시고 비슷한 내용으로 김운 위원님 제도개선인데요. 이 사업에 불필요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가는데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쭙봐도 돼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담당 국장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장현** 잘 아시는 것처럼 적정성 재검토라는 것은 당초에는 예타사업 대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예타 규모를 넘어섰을 때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규모가 넘어섰기 때문에 적정성 재검토 신청을 24년 10월에 한 바 있고 적정성 재검토가 25년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전체적인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제 집행 내역은 다 조정이 되었는데 일부 사업단 사업비의 일부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좀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간에 어떤 분은 제도개선으로 어떤 분은 주의로 이렇게 조금 엇갈리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거의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셔서 맞춰 주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 됩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백종현 간사님.

○**백종현 위원** 지금 4번에 다섯 가지 관련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 사업에 2026년도 본예산까지 기다리면 안 됐던 이유, 그 필요성 말고 긴급성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AI 분야는 기술발전이나 산업 수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정책효과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정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백종현 위원** 각각 다섯 가지 다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을 활용한 실증 R&D 사업이 2개고요, 다른 세 가지는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데이터중심병원을 지원하는 데이터 사업 그리고 제약산업 육성을 하는 분야인데 다 AI를 활용한 그런 정책 효과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시급성이 높다고 봤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시급성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나중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백종현 위원 추경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2027년 본예산 요구안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예,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들어가 있다면 지금 본예산 심사에서 사업별 타당성 검증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지요? 사업별로 타당성 검증을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예, 그렇습니다.

○백종현 위원 원칙이 무너지면…… 추경이 본예산 심사를 우회하는 뒷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의견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지요.

아까 얘기한 주의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3번?

○이수진 위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한지아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 예결위 있었는데 그때는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전 부처가 제출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AI 붙여서 전부 추경에 내놔던데 복지부도 그거겠지, AI 붙여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추경 신청할 때 얘기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어쨌든 결산에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고 수용하신 거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2차관 이형훈 예.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전부 제도개선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수진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직무대리 김기웅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마친 것 중에 아까 말한 치의학연구원 건이 아직 결론을 못 내서 보류로 되어 있고요. 아까 이만희 위원님 시정요구했던 것 내려서 제도개선으로 갈지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문의해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늦었지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리된 대로 잘 정리하셔서 내일 의결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관님과 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에 결산소위를 속개해서 보류된 한 건과 나머지 한 건, 두 건에 대한

결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그리고 정부 모두, 전문위원님들까지 수고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 윤 박지원 서영석 이수진 김기웅 백종현 한지아 전종덕

○출장 위원(3인)

이달희 이인영 전진숙

○청가 위원(1인)

서미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신은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수엽

제2차관 이형훈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감사관 민영신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건강보험정책국장 유주현

보건산업정책국장 성창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정책기획관 이윤신

국제협력관 김재우

복지정책관겸복지행정지원관직무대리 김문식

연금정책관 손호준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노인정책관 최봉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통합돌봄지원관 박재만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관 임을기

한의학정책관 방석배

첨단의료지원관직무대리 박정환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고희우

공공의료정책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관 이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기획조정관 우영택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김현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한운섭
식품소비안전국장 김현정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질병관리청
차장 김기남
기획조정관 장호연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진단분석국장 김갑정
의료안전예방국장 정통령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 최종희

합치회의록